

독일 環境法典의 總則

Allgemein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 UGB-AT

M. Kloepfer* P. Kunig**

E. Reh binder*** E. S. Aßmann****

譯 : 高 文 炫

〈 목 차 〉

I. 序 論	V. 展 望
II. 環境法典의 總則의 草案	1. 總則에 대한 추가작업
III. 環境法典의 中心思想과 內容	2. 環境法典의 各論의 法典化
1. 中心思想	3. 유럽共同體(EG)와 舊東 獨에서 의 發展
2. 法典化의 基本原則	附錄 : 環境法典 總則의 概觀
IV. 環境法의 內容 - 總則	

I. 序 論

이미 70년대 중반 무렵부터 논의되어¹⁾ 온 獨逸環境法의 法典化 (法典編纂)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²⁾ 급속하게 변화하는 社會의

* Berlin대학교 교수

** Berlin대학교 교수

*** Frankfurt a.M.대학교 교수

**** Heidelberg대학교 교수

1) 특히, 1976년 연방정부의 환경보고서, BT-Drucks[연방의회(하원) 의 사록], 7/5684 Tz. 109 : Kloepfer, ZfU(환경정책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잡지) 1979, 145면 이하 참조.

2) 연방환경장관의 보고[Umwelt(BMU)], 10/1990, 477면을 비교하라. 그 보고는 1990년 10월 8일 Schlo Auel에서 개최되었다. Auel담화에 대해 速記로 쓰여진 문서가 연방환경청의 보고서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제12대 국회(Legislaturperiode)를 위한 聯政의

限定條件下에서 法典編纂이라는 생각이 法(權利)形成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젠가 입증될 것이다.³⁾

環境法典의 總則의 편찬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1) 단지 중간 출발점(Ansatz)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복한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환경법의 生態的인 지속적 발전. 하나의 환경법전의 편찬은 오히려 현대 환경정책의 전체적인 징후에 상응한다.

(2) 완전한 環境法과 동시에 보다 적은 규범을 통하여 더 많은 환경보호를 창출하기 위하여 환경법규정의 포괄적이고 올바르게 정리한 조화라는 목적을 가진 환경법의 통일

(3) 단일의, 矛盾이 없고, 알기 쉬운 환경법을 통하여 환경규범의 執行의 개선, 보다 더 시민과 가깝게 됨(市民親和性, Bürgernähe) 그리고 주민(Bevölkerung)속에서 環境意識의 강화가 달성되어 져야 한다.⁴⁾

法典化되고 있는 법의 영역의 구분가능성이라는, 法典化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과 규정할 수 있는 소재의 이른바 法典化의 成熟性이 오늘날 환경법을 위해서 주어 졌다. : “환경보호의 특별법”으로 이해되는 환경법은 다른 법과 경계지을 수 있는 법 영역이다.⁵⁾ 환경법의 散在와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만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고

합의가 제12절 “환경정책” 내에 있는 L(제50)款 “환경보호의 법적 강화”에서 “하나의 환경법전이라는 발전 목표를 지닌 환경법의 조화”라는 제33호 계획이 재삼 확인 되었다. 1991년 1월 31일 Kohl정부 성명에서(연방정부 공보, Nr. 11/1991, 68면) 연방수상 Kohl은 “그 밖에 우리들은 하나의 전형적인 환경법전 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부한 환경법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3) 여기에 대하여는 Kindermann, Rechtslehre, 1979, 357면 이하 ; K. Schmidt, Die Zukunft der Kodifikationsidee, 1985, passim(도처에)
- 4) 여기에 대하여서는 많은 저서 대신에 예를 들면 Hoppe/Beckmann, Umweltrecht, 제2장, Rdnrn. 2 ; Storm, UTR(트리어 대학교 환경법 및 기술법 연구소 연구총서)5, 49면 이하(특히 63면 이하) 참조.
- 5) Kloepfer, Umweltrecht, 1989, 제1장, Rdnrn 41 이하

찰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法典化를 필요로 한다.

法典化는 1978년과 1986년 연방환경청의 위탁으로 수행된 학문적 준비작업을 근거로 할 수 있다. :

- Kloepfer, 환경법의 체계화, 연방환경청의 78년 8월 보고서
- Kloepfer/Messerschmidt, 환경법의 내용적 조화, 연방환경청의 86년 6월 보고서

위 두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밝혀질 수 있었다. 즉 환경법전 총칙의 제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總則制定의 결과로 결합된 長點이 短點, 예컨대 현존하는 규범체계의 散在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II. 環境法典의 總則의 草案

환경, 자연보호 그리고 원자로 안전을 위한 연방장관(聯邦環境長官)을 위하여 우리들이 1988년 4월 부터 1990년 4월 까지 실시하여 하나의 環境法典 總則 草案의 모델로 이끈 “일반환경행정법 세부구조”라는 연구계획은 사전준비연구를 계승하고 있다.⁶⁾ 이 草案은 당시 개개의 연구담당자의 문서에 의한 法案(Vorlagen)을 근거로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⁷⁾ 그 때 얻어진 결과는 모든 연구담당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되었다. : 그 理由 提示는⁸⁾

-
- 6) Kunig의 협력을 받은 Kloepfer, Reh binder, Schmidt-Aßman, Umweltgesetzbuch-Allgemeiner Teil, 연방환경청의 7/90 보고서, 1991.
 - 7) 연구그룹에 있어서 연구작업의 분배 : Kloepfer : 서론, 통칙, 환경공과금, 환경보조금, 조직과 관할(및 議長) ; Reh binder : 환경의무와 환경권, 환경결과평가, 탄력성 있는 수단, 환경보호관리자 등, 환경정보, 환경책임 등, 法制定 등 ; Schmidt-Aßmann : 계획, 開始統制, 공공시설의 이용 ; Kunig : 감독, 효과있는 조치
 - 8) (입법)이유제시는 포괄적인 조화형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인 議會 의사록에 있는 慣例的인 입법이유제시를 훨씬 벗어난다. 그 이유제시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모든 연구자의 학문적 견해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상응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⁹⁾

이 草案은 立法權限과 行政權限의 기능적 분배로부터 유래하며 가능한 권한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그 문제는 포괄적인 法典化로서의 환경법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즉 基本法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연방의 통일적인 입법권한이 없다는 입장. 물론 그 문제는 환경법전이 연방의 개별권한의 첨가 또는 결합을 통하여 단일의 토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결합의 수단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배타적이고 競合하는 立法權(基本法 제74조 11a호, 24호),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법규를 총괄하는 大綱法(聯邦이 각 州에 委任한 입법권한, 基本法 제75조 제3호, 제4호)의 결합을 통해서 소재가 결합되는 것인데, 그 소재에서 연방은 포괄적 규범통일의 強度와 관련하여

I. 시작할 때의 상황

1. 규정범위의 대상
2. 이제까지의 法狀況
 - a) 법상황
 - b) 이제까지 법에 있어서의 경험
 - c) 개혁논의
3. 大綱的 條件
 - a) 유럽공동체법
 - b) 입법권한

II. 제안

1. 중심사상
 2.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 9) 草案은 Frankfurt, Heidelberg, Trier 등에서의 수많은 회의에서 공동적으로 작업하여 이루어졌다. 각 章과 각 節에 있어서 어느 한 담당자가 먼저 규정의 概要를 立案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상세하게 記述되어 공식화된 제안의 형태로 관계 담당자에 의해서 제출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두 번째 口述會議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와 동시에 범조문의 세부 공식화 및 입법이유제시라는 학문적인 안전장치 이외에도 연구가 진척되어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상세히 형성되는 쏘작품의 구성속에 추가되는 章을 삽입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우선할 수 없다(입법권한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聯邦이 州에 선행해서 입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법전의 총칙을 위해서 委任立法의 보장이 극복할 수 없는 방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칙(allgemeinen Vorschriften)은 원칙적으로 大綱規定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항목별의 완전한 규정(Vollregelungen)으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環境法典의 中心思想과 內容

環境法典의 總則을 위하여 제시된 과제, 즉 복잡한 구조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현행 개별환경법상 어떤 규정들이 공통적이며 그래서 한뫼음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의하여 환경법규들이 정리되어져야 했다. 그렇지만 이 초안은 현행 환경법의 정리나 체계화된 요약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의 범창조적인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초안이 규정에 적합하게 현행 환경법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규범상태의 신중한 현대화와 조화라는 개념에서의 초안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법 구조에서의 초안보다도 더 높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독특하게 전문적인 차이들을 확일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환경법의 내적 통일성과 무모순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1. 中心思想

법전화의 중심적 목표설정은 환경법의 내부적 조화와 통일이어야 한다. 그 때 전체 법질서 속에서 환경법의 적응도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환경법이라는 특수분야에서 증대된 도그마적 구조들을 갖는 그러한 것이 특수분야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완전히 의미있게 보일 경우나 보이는 限(特別法的 規定의 留保) 노력이 傾注된다. 그 밖에 환경법의 法典編纂를 통하여 다

음과 같은 關心事(Anliegen)도 또한 실현되어 저야 한다.

(1) 環境保護에 있어서 媒體 支配的(medienübergreifenden), 生態的 項目의 법적 정착

(2) 環境法典의 基本的인, 強化된, 또한 法的으로도 重要的 原則(Leitlinien)으로서 環境政策의 3原則[事前配慮의 原則(Vorsorgeprinzip), 原因者責任의 原則(Verursacherprinzip), 協同의 原則(Kooperationsprinzip)]의 정착

(3) 豫防優位와 함께 環境侵害의 回避, 低減, 또는 調整(補償, Ausgleich)을 위한 環境조치(Umweltmaßnahmen)의 순위확정

2. 法典化의 基本原則

草案作業 동안 筆者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原則에 좌우되었다.

(1) 狹義의 環境법만이 법분야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狹義의 環境법의 법전편찬으로 제한

(2) 現행 環境법에 있어서 규정의 흠에 대한 종결

(3) 법전편찬의 법 발전에의 적응, 특히 環境헌법, 유럽環境법과 국제環境법의 발전에 대한 법전 편찬의 적응

(4) 적어도 環境법의 현재 기준의 유지(逆行禁止)

(5) 市場合致의 措置의 原則的 強調라는 의미에 있어서 環境法典上의 手段의 가능한 限 市場合致: 環境法典은 한정된 生態的 法 테두리에서 社會的 市場經濟를 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6) 環境보호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계발(Entfaltung)의 강조

(7) 소위 탄력성이 있는 手段과 점점 더 의미있는 環境과 관련된 정보우선권의 영역을 포함한 環境영향적인 국가행위의 가능한 限 광범위하게 미치는 범위의 고려

IV. 環境法의 內容-總則

環境法 總則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1장 通 則

제1장은 환경법의 기본적 목표와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法의 目的, 概念定義)은 제1조에서 환경법의 기본적인 내용의 개념(목표, 행위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인간 건강의 보호를 지향하고, 다른 법의과의 형량의 필요성을 통하여 상대화된다. 특히 환경법이 법률의 효력범위 밖에서 환경보호의 관심사에 분명히 기여해야 하는 동조 제4항에서 더 많은 국제성에 대한 신념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 제2조는 부분적으로 넘겨받은 (종래의) 개념구성과 상이한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한다.

제2절(環境法の 諸 基本原則)은 주로 草案에서 소위 환경보호의 중심 노선(제3조), 즉 제1조에서 표현한 법률의 중요한 실질적 고려를 포함한다. 계속해서 제4조-제6조에서는 환경보호의 諸 基本原則(事前配慮의 原則, 原因者責任의 原則, 協同의 原則)을 수용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그동안 독일 통일의 길목에서 이미 현행법이 되었다(國家條約 제16조 제1항 2문, 통일조약 제34조 제1항). 여기서 제4조는 “多機能的 규정(Gebot)” [환경사전배려의 동등한 구성요소로서 위험조정(위험통제, Risikosteuerung)과 자원관리(Ressourcenbewirtschaftung)]로서 사전배려원칙의 이해로부터 나오며, 특히 환경사전배려의 수단에 관한 표현 때문에 역시 (국가적 영역을 넘어선) 행위개념을 내용으로 한다. 게다가 특히 제5조는 기본적 환경정책의 원칙으로서 原因者責任의 原則의 규범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한다(특히 秩序法과 稅法에서 현행의 귀책기준이라는 척도에 의한 실질적 책임원칙으로서 原因者責任의 原則). 나아가 (독자적으로 정당화된 원칙으로서 정착한) 공동부담원칙의 기본적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제6조는 協同의 原則에 대한 廣義의 이해로부터 나온다. 그것에 따라서

협동하에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대한 국가가 아닌 소유자 개개인의 협력이 이해된다. 그 밖에도 시민에게 자기책임적 결정의 가능성을 위임하는 조치가 그 조치를 통하여 환경의 保護가 보장되며 당사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지 않는 限 금지나 명령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 이것은 동등한 효과의 경우 그러한 금지나 명령과 같은 명령적 행위조정(행위통제, Verhaltenssteuerung)에 비하여 탄력성있는 수단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環境義務와 環境權

제2장은 環境(제7조-제14조)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의무와 개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절(環境義務)은 책임규정(제9조)과 함께 일반적 법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환경침해나 훼손의 부작용과 제거를 위한 이전의 법에 규정되었던 일반적인 의무규정들을 강화하는 의무규정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으로서 특히 위험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제7조)와 사전배려의 의무(제8조)가 있다. 不作爲義務와 방해배제의무로서 주로 전개되는 이러한 실질적 의무와 함께 작위의무가 기본의무를 특정화하고 보충하고 있다(제10조 節次와 製造物으로부터 초래된 환경위험에 관한 調査(搜查), 考慮, 告知, 제11조 자체감시, 제12조 새로운 상태의 통지의무, 제13조 학문과 기술 상태에 관한 보고 의무, 제14조 사업체의 환경회계보고의무). 이러한 의무들은 기본 원칙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各論에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環境權”節은 (특히 실행가능성의 근거에서) 건강한 환경과 자연적 생존근거에 대한 일반적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나, 一定한(bestimmt) 環境財(山林과 耕地, 제17조)의 이용에 대한 既存法에 散在한 개개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룬다. 계속해서 私所有에 속한 環境財의 이용을 위한 소유자의 권한이 규정된다(제16조). 企業의 業務上 秘密의 보호도 또한 통합되어 규정된다(제18조).

개개인으로부터 위협받는 환경위험의 예방을 위한, 특히 해당 환경위험의 低減을 위한 公共機關(Behörde)¹⁰⁾의 개입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특별히 강조된다(제15조).

제3장 計 劃(Planung)

제3장에서는 環境과 관련된 計劃 規定(제19조-제30조)을 포함하고 있다. 예견하는 목표와 처분에 합치되고 행위형태로서의 계획은 국가의 環境보호의 필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법전화는 環境 특유의 계획유형을 위한 규정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계획에 있어서의 環境적 이해관계에 대한 계획상의 방비책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1절에서 다루고 있는 環境中心計劃은 環境보호를 주장하는 專門計劃이 가능한 限 테두리 안에서 공동으로 이행되는 媒體 支配的이고 環境특유의 중심계획의 모델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 計劃의 세 段階[州 全域에 걸친(landesweite), 지방적(regionale), 지역적(örtliche) 環境중심계획]은 全體空間計劃(räumlichen Gesamtplanung)의 段階를 조절한다(제19-제25조). 環境중심계획의 유형, 과제, 기본원칙 그리고 작동방식 등이 법에 가능한 限 자세히 규정된다. 그와는 반대로 절차에 있어서는 州法上的의 규정에 위임한다. 環境중심계획은 環境계획법의 핵심을 구성해야 한다.

위의 함께 제2절[廢棄物處理計劃(Entsorgungsplanung), 環境프

10) 譯者 註, 여기서 'Behörde'란 일반적으로 '관청' 또는 '행정(관)청' 또는 '행정기관'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자칫 조직법상의 개념 즉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파악되어 사법부 등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공공기관'으로 번역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1월 7일 제4734호로 제정된 公共機關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다. 洪準亨, 環境情報公開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연구, 行政論叢 제34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12, 220면 脚註 34)참조.

로그램(Umweltprogramme)]에서는 환경법의 몇몇 필수적인 특별과제의 환경수단을 규제한다. 계속해서 제27조에서는 연방정부의 환경관련 계획 및 처분과 환경정책의 개별분야를 위한 專門프로그램의 中期的 觀點의 표현으로서 연방환경프로그램의 수단이 제안되고 있다. 반대로 대형 공공기관 시설물의 일반적인 所在地는 환경법전에 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획체계적으로 空間計劃의 不可缺한 요소에 속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環境法典은 生態의 계획체계에 관한 독자적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특유한 관점들을 全體空間計劃과 기타 환경에 특유하지는 않지만 환경과 관련되는 법에 적용시키는 추가보완 규정들도 가지고 있다.

제3절(다른 公共計劃의 環境法的 拘束)은 공공기관의 계획시 결정행위를 확정하는 몇몇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또한 목표충돌이 중대한 환경손해와 자연적 생활기반의 장기적인 파괴로 이르게 된다면 환경보호의 절대적 우위가 확고히 된다(제28조 - 제30조).

제4장 環境結果評價(Umweltfolgenprüfung)

지금까지의 법에서 環境影響評價(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라고 표현되곤 하였으나 草案의 제4장(제31조 - 제49조)에서는 언어의 정확성의 이유에서 環境結果評價라고 불리우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제31조 - 제34조)에서는 環境結果評價를 위한 통칙을 확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환경결과평가의 目的(제31조)과 概念定義(제32조)와 함께 환경법과 계획법의 특별규정과 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제33조), 그리고 行政規則의 제정을 위한 委任(제34조) 등을 포함한다.

제2절(計劃時的 環境結果評價, 제35조 - 제45조)은 척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이전까지의 관념을 포함하는 사전의 계획에 의한 환경결과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환경

결과평가의 규정은 하나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의 조심스러운 발전이라 할 수 있다. 重要한 改革案들은 代案의 심사의무, 환경 결과평가를 종결한 보고서(환경결과설명)의 작성의무와 조사 범위의 확정시 公衆參與 등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결정의 경우 환경결과평가의 기초가 된다(여러 면에서 제2절의 규정에 참조되는 제3절)

제3절(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 있어서의 環境結果評價, 제46-제49조)에서 사전계획의 허가에 관한 결정으로서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 環境結果評價에 대한 내용이 규정된다. 여기서 선행절차, 국토계획절차, 건축관리계획절차, 그리고 既存 法の 지속적 발전으로서 사전계획의 입장과 財政의 확정과 확보를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정립을 위한 절차도 역시 다루어진다. 이와 함께 절차는 항상 사전 계획과 관련되고, 또한 그 事後 許可가 심사의무인 것이 전제 조건이다.

제5장 直接的 調整(直接的 統制, Direkte Steuerung)

이 章은 직접적 조정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는 受範者(Adressat)에게 일정한 행위(Verhalten)를 강제적(금지나 명령을 통하여)으로 부과하는 전형적으로 명령적인 규정이 고려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령의 유형에 상응한다. 간접적 조정(여기에 관하여는 제6장을 비교하라)와 반대로 직접적 조정을 통하여 결정된 행위는 국가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

제1절은 所謂 開始統制(Eröffnungskontrollen)를 다루고 있다. 認可, 許可, 承認, 告知, 그리고 計劃確定 등의 留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중심적인, 부분적으로는 부수적인 환경보호에 중요한 개시통계를 포함하는 모든 법적 구성요소의 통일성은 초안작성자의 견해에 의하면 물론, 건축허가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종종 환경법의 영역을 넘어서 그리고 그 영역에서 전혀 통일적 유형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법전 총칙에서 법전화를 불허한다. 공간(Raum), 시설, 물질, 또는 행위 등과 관련된 監督開始

(Kontrollansätze)는 그 자신의 실제구조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일모형이 의미가 없게 보일 정도로 상호간 상이하다. 開始統制에 관한 특별규정은 환경법 각론에서 다루어 져야 하고 단지 통일성의 몇몇 기초는 총칙부분에서 추구될 수 있다(제50조-제56조 참조). : 제1款(Unterabschnitt)[통칙 제50조-제51조]에서 환경보호의 개선을 위한 개시통제의 모든 구성요소를 위하여 各專門의 특별규정의 적용시 주시해야만 하는 실제적·절차법적 요구가 상응해서 규범화된다. 제2款[環境承認(Umweltbewilligung), 제52조-제56조]에서는 두드러지고 공간적으로 의미있는 개시통제를 위하여 各專門法이 이용할 수 있는 통제절차의 특별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이 만들어진다. 이 款의 규정들은 추가적인 법제정행위를 통하여 그 규정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혀지는 행정계획법상 계획확정규정과 유사하게 효력이 있다. 環境承認은 허가(Zulassung)규정들의 조화의 본보기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복합적 환경인가를 위한 存續 規定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제54조에 규정된 승인절차는 본질적인 점에서 聯邦임시시운防止法(BImSchG) 제10조를 답습하고 있다. 가능성 때문에 절차중개자제도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聯邦으로 부터 州에게 부여하는 이 규정의 제4항은 지속적 법발전을 측정하는 제안들에 속한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해명기간의 준비와 실행을 위임하는 것을 권한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다.

제2절[監視(Überwachung), 제57조-제71조]은 環境法에 있어서 監視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개관할 수 없는) 現行法の 存續調査(Bestandsaufnahme)에 근거를 두고, 專門法的인 變更에 비하면 開放的인 또는 各論에서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監視規定의 調和가 최고 높은 수준에서 추구되었다. 규정흥결이 인식될 수 있는 限 지금까지의 법이 보완되었다. 또한 통상의 감시와 특별한 동기(특히 危險防止; 감시조치의 이행을 위한 環境위험의무(Umweltgefahren Verpflichtung)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62조)의 감시 사이에 가능한 限 분명한 구별을

통하여 집행효과의 강화가 추구되어 졌다. 세부적인 절차규정(예컨대 제65조)을 통하여 감시의무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되어 졌다. 감시의 효과는 그것을 통하여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감시의무자의 공동협력의 활성화에 특별한 가치가 놓여 있다.

제3절에서 규정된, 예를 들면 環境影響(Umweltverträglichkeit)에 대한 요구를 추후에 提高하는 것(제73조), 환경에 중요한 행위의 금지 또는 시설의 중지(제74조), 시설의 제거와 認可의 취소(제75조, 제76조) 등과 같은 침해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存續保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環境法典의 규정은 조심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이 예를 들면 當爲規定(Soll-Vorschriften)을 통해서나 결정프로그램(Entscheidungsprogramm)에서 미리 규정된 것(Vorgabe)을 통하여 가능한 限. 환경침해에 대한 처분의 다양한 목록을 작성하는 제72조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명백히 하고 개관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 규범 자체는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專門法的 전환을 필요로 한다. 제73조는 추가적 附款과 許可(Zulassung)決定과 연결이 없는 추가적 명령을 규정한다. 제74조는 환경위험에 근거하는 환경에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獨自的 禁止權限(Untersagungsermächtigung)을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서의 철거처분 또는 원상회복처분 명령은 제74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환경친화 상태의 원상회복을 보충한다. 제76조는 환경보호를 위한 強化라는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取消에 관한 行政節次法(VwVfG)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을 적합하게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 間接的 調整(間接的 統制, Indirekte Steuerung)

간접적 조정의 수단들은 (제5장에 규정된 직접적 행위조정)의 수단과는 달리 受範者(Adressat)의 動機賦與(Motivation)에 영향을 끼치고 수범자에게 상응하는 다소간 넓은 決定餘地를 주고 있다. 여기서 국가는 시민에 대하여 다만 자극 또는 위협적인 부담이 빈번히 있는 행위기대를 공식화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기대에 어긋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상태로 있는 그런 행위기대를 공식화 한다.

제1절(環境公課金, Umweltabgaben, 제77조 - 제81조)은 特別公課金에 관한 통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環境法 總則의 一般의 特性 때문에 公課金の 個別的인 內容, 즉 公課金の 構成要件, 公課金策定, 徵收節次 내지 方法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規定은 그러한 것의 관리목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環境法 各論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環境公課金” 節은 環境에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環境공과금이 징수된다는 원칙과 함께 環境公課金에 대한 基本的 特徵(公課金 對象者, 公課金 增減, 請求와 利用)만을 규정한다.

제2절(環境補助金, Umweltsubventionen)은 제1조의 目的을 추구하는 그러한 보조금을 규정한다(제82조 - 제86조). 그것은 行政法上의 보조금개념에서 나오는 環境보조금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보조금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限) 實質財貨(Realgütern)의 제공, 用役의 제공 그리고 一稅法上에 規定된 一稅制上의 惠澤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히 보조금수혜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청문권이 규정된다. 公益이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限 抵觸되는 公益과 私益 사이의 衡량이 행해진다. 보장된 수단 의 합법적 적용의 観点에서 통제가능성과 추가보조금의 대부, 보증, 보장 의 우선권 규정, 附款과 條件이 있는 보조금 보증의 가능성 등도 또한 環境 法 전에 수용되었다. 잘못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결정의 취소도 역시 규정된다. 1976년 7월 29일 의 보조금법 규정[聯邦法令官報 第1권(BGBl. I) 2037면]의 環境補助金에 의 相應하는 適用도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環境보조금은 刑法典(StGB) 第264조 第6항의 보조금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절(彈力的 手段, Flexible Instrumente, 제87조 - 제90조)에서는 環境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소위 탄력적인 수단 즉 利用利益(제88조)과 補償(Kompensationen, 제89조, 제90조)이 규정된다. 새로운 소위 탄력적인 수단들의 적용은 제87조의 원칙에 의하여 조절되고 따라서 소위 탄력적인 수단들은 環境법의 목적과 일치

해야 한다. 특히 이 수단의 지속적인 적용으로¹¹⁾ 환경침해와 환경 위험이 증가되어서는 안되거나 또는 법률적 요구를 고려할 때와 等價의 내지 그 이상의 環境의 負擔 輕減(Entlastung)이 도달되어야 한다.

제4절은 公共施設 利用(제91조-제93조)의 관점에서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수단을 촉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범영역에서 원 초적으로 다른 이해관계가 규정되나 환경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環境法典의 總則에서는 관련 규정이 오직 기본적 특징과 중심분야에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용관계의 구체적 형태는 현행 연방법(교통법, 에너지경제법)에 의하여 監督公共機關의 통제하에 있다. 그 이용관계를 위하여 실제적 의무구속과 形態決定(Ausgestaltungsentscheidung)경우에 環境에 중요한 기준의 고려라는 절차법상의 안전장치가 규정되어 있다.

제5절[環境保護管理者(Umweltschutzdirektor), 環境受任者(Umweltbeauftragter)]은 자기통제를 통하여 환경법의 질서법적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제94조-제102조). 環境法典의 規定을 통하여 사업자의 전략적 결정의 관점에서 특히 環境親和의 節次와 製造物의 도입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合資會社(Kapitalgesellschaften)를 위한 대표기관과 동등한 권리의 회원으로서 환경보호관리자의 선출이 규정되어 있다(제94조). 株式合資會社(KG&A,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의 법형태로 있는 企業과 合名會社(Personenhandelsgesellschaften) 등은 定款에 의하여 企業의 經營陣內에 환경보호조직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적의무준수를 제한하는 새로 삼입된 聯邦임미시온(Immission)防止法(BImSchG) 제52조a를 능가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經營受任者規定(제95조-제102조)은 聯邦임미시온防止法の 세련되게 표현된 규정을 광범위하게 모범으로 삼고

11) 협상기구 및 시장기구에 입각한 수단이 명령적 수단보다는 효과가 더 더디게 나타나지만 공식화가 선택되었다.

있다. 그러나 放射線保護法規定의 개별적 요소도 또한 수용하고 있다.

제7장 環境情報(Umweltinformation)

환경연구, 환경관찰, 환경통계, 환경보고, 환경교육 등의 영역을 위한 법규정이 제7장에 들어 있다(제103조 - 제109조). 그와 동시에 公共機關(Behörde)의 이에 관한 업무는 총괄규정의 대상이 되고 그것에 관해서 법치국가적으로 명령되는 법적 근거에 의지한다.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강력한 사전배려적 환경보호의 방향에서 지금까지의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 이 규정들은 단지 과제의 배당과 목표설정, 전환과 활동의 대상을 포함하는 大綱規定에만 限하게 된다. 국가의 환경연구(제103조), 국가적 입장을 통한 환경관찰(제104조), 公衆에 대한 국가적 환경계몽(제109조) 등은 국가적 과제로서 聯邦과 州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할당된다. 제105조는 연방에 관한 과제할당과 환경통계 대상의 한정(Umschreibung)을 환경통계법으로부터 넘겨받아 규정한다. 제106조는 聯邦과 州의 환경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있어서 환경보호의 가치를 위하여 의미가 있는 사업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7조는 환경적합적 행동을 위한 국가적 경고와 권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제108조는 環境標識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는 宣傳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오늘날 環境封印(Umweltsiegel)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의 環境마크(環境標識, Blauer Engel)의 授與를 위한 법적 근거를 주고 있다.

제8장 環境責任(Umwelthaftung)과 補償(賠償, Entschädigung)

제8장(제110조 - 제130조)은 環境責任法規定을 모범으로 삼고, 부분적으로는 그 법이외의 것을 모범으로 삼는 환경책임규정을 포함한다. 水資源管理法(Wasserhaushaltsgesetz, WHG) 제22조에 의한 위험책임이 포함되며 반대로 相隣關係法上的 補償責任(Ausgleichshaftung)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환경손해기금

의 창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一般 公法上 補償(賠償)規定이 규정되어 있다.

제1절(環境責任, 제110조-제129조)의 규정은 제110조의 環境危害施設을 운영하거나 환경위험물질 생산이나 (그와 함께) 迂廻生産하는 그러한 것은 제8장의 규정척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보상 의무를 진다는 기본원칙으로 부터 유래한다. 草案은 따라서 1990년 12월 10일의 環境責任法의 列舉原則(Listenprinzip)을 따르지 않는다[聯邦法令官報 제1권(BGBI. I) 2634면]. 책임은 環境危害施設(제112조), 水資源 및 地表環境에 危害한 행위(제114조, 제115조)와 환경위험물질의 운송(제116조)이 원인이 되는 환경침해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製造物責任法(Produkthaftungsgesetz)規定을 능가하여 이 법의 의미에서 過失을 증명하는 환경위험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환경침해책임이 규정되어 있다(제117조). 自然(자연관리, Naturhaushalt)의 침해시 원상회복하는 公法上의 地方自治團體(öffentlich-rechtlichen Gebietskörperschaft)에 대하여 原狀回復義務 또는 그 비용에 대한 의무가 성립된다(제118조). 계속해서 이 절에서는 정규영업을 통한 물적 손실의 경우에 예상할 수 없는 침해에 대한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9조). 原因者가 다수인 경우 부분적으로 단지 補充的 總債務者的 責任(제120조), 原因의 推定(제121조), 情報提供義務(Auskunftspflicht, 제122조-제124조), 共同債務(제125조), 補償義務의 범위(제126조-제127조), 填補의 事前配慮(Deckungsvorsorge, 제128조), 그리고 民法規定의 適用 등이 포함된다(제129조).

제130조[環境損害의 賠償(補償, Entschädigung)]는 일반배상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예상할 수 없는 환경손해에 대하여, 제112조, 제114-제117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예컨대 山林損害(Waldschäden)] 賠償義務에 대하여 州를 통하여 正當한 배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련된 법정책적 발전을 저지하지 않기 위하여 환경손해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포기되었다. 草案에서 규정된 해결책은 州에게로 환경공과

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사실적 계산을 고려하고 있다.

제9장 團體(Verbände), 節次公開(Verfahrensöffentlichkeit)

제1절(團體의 參加)에서는 環境保護를 위하여 특히 의미있는 行政節次, 法制定節次와 計劃(Planung)節次에서 인정된 環境보호 단체의 지금까지의 현행법의 범위를 넘는 공동참여에 관한 권리가 규정된다(제131조-제132조). 그 외에 環境결과평가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계획(Vorhaben)을 위한 團體訴訟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연결하여 제1절은 단체소송규정(제133조)을 위한 州의 유보도 또한 규정되어 있다.

제2절(節次的 公開, 제134조-제144조)에서는 環境에 관한 情報의 자유로운 접근[유럽共同體官報(Amtsblatt der Europäische Gemeinschaften, ABIEG), Nr. L 158, 1990년 6월 23일, 56면]에 관한 1990년 6월 7일의 유럽공동체평의회(Rat)의 기본노선과 연결하여 環境관련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원칙이 정착되고 그 원칙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環境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개개인과 公衆을 위한 環境危險(Umweltgefahren und Umweltrisiken)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정보의 보급을 보장하는 것이다(제134조). 草案은 개개인에게 속하는 環境문서의 자유로운 열람의 권리로 부터 유래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을 허락한다(제137조). 제138조-제141조는 個人 身上資料의 보호(제138조), 또는 業務上 秘密의 保護(제139조), 법집행과 형사소추의 보호(제140조), 그리고 공공복지의 보호(제141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단지 제한된 문서열람권과 정보제공권이 있다(제142조). 특히 공공기관의 결정절차의 보호도 또한 규정되었다(제143조). 문서열람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행령을 통해서 강구되어져야 한다.

제10장 法制定(Rechtsetzung)과 規則制定(Regelsetzung)

이 章에서는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그리고 法規制定 時 學問的 專門家의 參與와 公衆參與에 관한 규정, 草案의 근거와 環境基準의 定期的 再審査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위한 위임을 포함한다. 근거되고 있는 모델은 기존의 법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법제정 시 비공식적 공중참여의 더 강력한 법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제1절의 法規命令(Rechtsverordnungen)은 특히 환경의 質의 한 계가치를 위하여(제145조), 시설과 경영방식에 대한 청구(Anforderung)의 확정을 위하여(제146조), 또는 물질과 준비물(Zubereitungen), 제조물에 대한 청구의 확정을 위하여(제147조), 제146조-제147조에 확정되어 있는 청구에 대한 예외(제148조), 命令과 行政規則의 同化(Angleichung)를 위하여(제149조) 제정될 수 있다. 계속해서 草案은 環境法典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규정하지 않는 限 聯邦政府가 앞에서 언급한 授權(Ermächtigung)의 受領者(Empfänger)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50조), 聯邦參事院(Bundesrat)의 參與(제151조), 참가자 구성방식의 기본규정과 함께 참가자 범위의 청문과 전문가위원회(제152조), 法規命令의 草案을 위한 이유서작성의무(제153조)와 법규명령의 정기적 심사를 위한 의무(제154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行政規則(Verwaltungsvorschriften)을 내용으로 한다. 학문적 인식과 기술적 발전의 상태가 아직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 제2절의 규정에 따라서 제145조-제146조에서 설명된 확정과 행정규칙에서 제155조에 의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156조는 행정규칙은 技術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규정, 技術의 상태 또는 학문과 技術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法律上 推定(Vermutung)을 포함한다. 연방정부는 환경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限 앞에 언급된 授權의 권리자이다(제157조). 연방정부의 참여(제158조), 공포 의무와 절차(제159조)와 행정규칙의 정기적 심사 의무 규정이 부수된다(제160조).

제3절은 私的 擬似 法制定(privaten Quasi-Rechtsetzung)으로서

技術的 規則을 포함한다. 제161조는 기술적 규칙을 위하여 그 규칙들이 분명한 청구를 충족시킬 때 제156조에 상응하는 推定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은 그것이 公共의 利益을 위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일 때 특별 절차에서 公共機關을 통하여 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공적으로 도입된 기술적 규칙은 정기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제162조).

제11장 組織과 權限

제11장(제163조-제169조)은 기본적으로 법집행의 州優位의 權限으로 부터 나온다. 이 章에서는 環境보호에 종사하는 聯邦上級 公共機關(연방환경청, 연방방사선관리청, 그리고 설립중인 연방자연관리청), 연방상급공공기관에의 과제배당과 (下級公共機關에 대한 國家의) 行政 監督(Fachaufsicht)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제164조-제167조). 게다가 이 章에서는 연방환경장관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4년 임기(한번의 연임가능)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環境전문위원회(제168조)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環境法典에 구속되고 다만 州의 설득력이 있는 변명에 대한 예외를 둔 所謂 公共財産의 管理者로서의 國家(öffentlichen Hand)의 環境 義務가 규정되어 있다(제169조).

附則과 制裁

法律의 效力發生, 經過規定(Übergangsvorschriften)과 導入規定(Eingangsvorschriften)에 관한 규정(Bestimmung)의 공식화 등은 도외시된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이 문제는 立法(Gesetzgebung)이라는 나중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制裁規定에 대하여 다만 勸告(Empfehlungen)만이 제시된다. 環境 특유의 형벌 규정은 環境법전에 들어 있어서는 안되고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V. 展 望

1. 總則에 대한 추가작업

앞에 제시된 草案은 環境法의 法典化에 대한 지속적 입법 작업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절차를 위하여 專門家案의 典刑으로서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도 있는 진보된 법률안의 획득을 위하여 실무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Sachverständigenkommission)의 설치가 권고 된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하는 聯邦部處, 州와 地方自治團體(Kommunal 단계의)가 참여해야 하며, 역시 學界, 經濟界와 環境團體 等の 代表도 참여해야 한다.

2. 環境法典의 各論의 法典化

그 밖에 제시된 草案은 環境法의 包括的인 法典化의 一環으로 이해된다.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環境法의 廣範圍한 문제들이 環境法 各論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터 이 草案이 나온다. 包括的인 環境法의 法典化過程은 이렇게 함으로써야 비로소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대략 다음과 같은 環境法 各論의 目次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임미시온防止
- (2) 원자력(핵에너지)와 방사선보호
- (3) 자연보호와 풍경보호
- (4) 하천보호와 수자원관리
- (5)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6) 위험물질
- (7) 地表環境保全(토지보전, Bodenschutz)

概略的으로 본 各論은 總則의 規定에 근거하여 總則의 前提를 주의하면서 分野別 特殊性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종국적으로 제시된 각론 규정이 개개의 사례에서 제안된 草案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 동안에 環境個別法을 改正하는 모든 경우에 總則에 대해 제시된 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環境法典(UGB)을 위하여 舊法(Altgesetzen)과 環境法 總則(UGB-AT) 사이에 어떠한 있을지도 모를 충돌이 해소되어야 한다.

環境法典의 各論의 학문적 草案을 위한 事前作業이 그 사이에 教授委員會의¹²⁾ 選任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委員會는 1993년 중반까지 學問的 草案을 제시하여야 한다. 1990년대 末에 環境法 各論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면, 獨逸은 環境法の 포괄적인 法典化를 가지고 즉 “環境保護의 基本法”을 가지고 새로운 21世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3. 유럽共同體(EG)와 舊東獨에서의 發展

계속적 발전의 경우 유럽공동체에서 환경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럽 통합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의 환경법의 지속적 발전과 精緻性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草案은 한편에서는 존속하거나 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규정들을 끄집어 내어서 변경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위한 규정과 모형들(Modelle)을 발전시킬 정도로 유럽의 경우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 草案은 유럽환경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물론 후에 유럽공동체 법의 예측할 수 없는 改正(Änderung)에 대한 이 草案의 불가피한 適應(Anpassung)을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獨逸統一의 완성의 길목에서의 발전도 고려되어야 한다. 統一條約 제34조 제1항은 1990년 6월 29일의 獨逸 民主共和國(DDR, 舊東獨) (통일조약을 통하여 실효된) 環境大綱法과 관련된 國家條約 제16조에 의하여 구성된 독일환경연합에 근거를

12) 教授委員會의 構成 : Jarass(임머시온방지), Klopfer(議長), Kunig(폐기물관리와 폐기물의 처리), Papier(원자력과 방사선보호), Peine[地表環境保全(土地保全)], Reh binder(위험물질), Salzwedel(하천보호 및 수자원관리), Schmidt-Aßmann(자연보호 및 풍경보호). 이 위원회의 연구작업은 1991년 1월에 시작되었다.

두고 있는, 事前配慮의 原則, 原因者責任의 原則과 協同의 原則下에서 人間의 자연적 생존기반을 보호하고 生態的 생존관계의 통일성을 높은 수준에서 촉진해야 하는 立法者(Gesetzgeber)의 과제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가조약 제16조 제4항은 공동의 환경법의 지속적 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環境法典 總則에 제안된 규정은 統一 獨逸에 있어서 實質的(materiellen) 統一의 完成과 環境法の 持續的 發展을 위한 討論의 基礎로서도 역시 기여할 수 있다.

◆ 附錄：環境法典 總則의 概觀 ◆

제1장 通則(제1조 - 제6조)

- 제1절 法의 目的, 概念定義(제1조 - 제2조)
- 제2절 環境法の 基本原則(제3조 - 제6조)

제2장 環境 義務와 環境權(제7조 - 제18조)

- 제1절 環境義務(제7조 - 제14조)
- 제2절 環境權(제15조 - 제18조)

제3장 計劃(제19조 - 제30조)

- 제1절 環境中心計劃(제19조 - 제25조)
- 제2절 廢棄物處理計劃(Entsorgungsplanung), 環境프로그램(Umweltprogramme)(제26조-제27조)
- 제3절 公共計劃의 環境法的 拘束(제28조 - 제30조)

제4장 環境結果評價(제31조 - 제49조)

- 제1절 通則(제31조 - 제34조)
- 제2절 事前計劃時 環境結果評價(제35조 - 제45조)
- 제3절 다른 決定時 環境結果評價(제46조 - 제49조)

제5장 直接的 調整(統制, 제50조 - 제76조)

제1절 開始統制(제50조 - 제56조)

제1관 通則(제50조 - 제51조)

제2관 環境承認(제52조 - 제56조)

제2절 監視(제57조 - 제71조)

제3절 侵害의 處分(제72조 - 제76조)

제6장 間接的 調整(統制, 제77조 - 제102조)

제1절 環境公課金(제77조 - 제81조)

제2절 環境補助金(제82조 - 제86조)

제3절 彈力的 手段(제87조 - 제90조)

제4절 公共施設의 利用(제91조 - 제93조)

제5절 環境保護管理者, 環境受任者(제94 - 102조)

제7장 環境情報(제103조 - 제109조)

제8장 環境責任과 環境損害에 대한 賠償(補償)(제110조 - 제130조)

제1절 環境責任(제110조 - 제129조)

제2절 環境損害에 대한 賠償(補償)(제130조)

제9장 團體의 參與, 節次의 公開(제131조 - 제144조)

제1절 團體의 參與(제131조 - 제133조)

제2절 節次의 公開(제134조 - 제144조)

제10장 法制定과 規則制定(제145조 - 제162조)

제1절 法規命令(제145조 - 제154조)

제2절 行政規則(제155조 - 제160조)

제3절 技術的 規則(제161조 - 제162조)

제11장 組織과 權限, 公共財産의 管理者로서의 國家의 環境義務(제163조 - 제169조)

(제12장 附則)

독일 環境法典의 各論

Besonderen Teils eines Umweltgesetzbuches, UGB - BT

M. Kloepfer*

譯：高 文 炫

〈목 차〉

I. 一般論	규정과 내용
1. 法典化(法典編纂)의 中心思想 및 諸 原則	2. 各 章의 內容
2. 草案의 對象	III. 展 望
3. 草案의 작성시의 작업방법과 문제	1. 各論을 통한 總則의 필수적인 調和와 수정
II. 環境法典의 內容-各論	2. 獨立的인 專門委員會
1. 法典編纂의 構造-環境法各論(UGB-BT)의 포괄적	3. 眺 望
	附錄：環境法典의 各論(特別篇) 概觀

I. 一般論

1. 法典化(法典編纂)의 中心思想 및 諸 原則

1993년 말에 一團의 敎授研究班¹⁾이 연방환경부를 위해 環境法典 各論(特別篇, UGB-BT)의 草案을 완성했다. 이 학문적인 草案과 함께 연방독일의 環境법의 포괄적인 법전화의 계획은 인식

*Berlin 대학교 교수

1)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Jarass(임미시온방지), Kloepfer(議長, 총편집), Kunig(폐기물관리와 폐기물의 처리), Papier(원자력과 방사선보호), Peine(地表環境保全), Reh binder(위험물질), Salzwedel(하천보호 및 수자원관리), Schmidt-Abmann(자연보호 및 풍경보호)

가능한 형태물을 갖게 되었다. 이 各論²⁾은 이미 1990년에 교수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環境法典 總則(一般篇, UGB-AT)³⁾과 더불어 統一體를 이룬다. 통일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연방독일 환경법의 전체 초안으로 이끌 수 있는 이 학문적 선행작업은 이로써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른 법의과의 형량에서도 또한 환경보호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역사적 시대에서 발생하여 존속하는 현행 환경법의 규범요소들을 통일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성문화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법 제정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나로 鑄造된 환경법이 가능할 것인데, 물론 여기에서 개개 영역들의 불가피한 개별적 특수성들은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調和를 이룬 環境法 法典化의 틀 안에서, 개개 규정들 자체의 다양한 개선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래된 環境關聯의 規定(예를 들어 原子力法에서의 規定)을 보다 최근의 環境法(예를 들면 聯邦임미시온防止法, Bundes-Immissionsschutzgesetz)에 調和시키는 것을 통하여서도 環境保護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環境法の 統一化는 필자의 관점에서 단순화와 체계화의 목적을 넘어 보다 나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적인 方向(Richtung)을 가지는 것이었고, 위 교수연구반에 있어 환경정책적 후퇴는 더군다나 금지된 것이었다.

包括적인 環境法の 法典化는 環境保護의 媒體 支配의 徵候의 추구를 다른 어느 규범 형성형태보다도 더 가능하게 한다. 환경법전의 편찬으로 법률상의 調整(統制, Steuerung)과 (시간적으로 빈번히 바뀌는) 복잡한 生態的 作用構造 때문에 그 결과가 상이한 환경매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環境財에 대한 人間에 의해 야기된 영향의 극복(Bewältigung)을 계획하는 것이 특별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법전은 전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의

2) 이 초안은 1990년 연방환경정보고서(UBA - Berichte) 시리즈에 나온다.

3) Kunig의 協力下의 Kloepfer/Rehbinder/Schmidt - Aßmann, Umweltgesetzbuch - Allgemeiner Teil, 연방환경청 보고서(UBA - Berichte) 7/90, 2판, Erich Schmidt출판사, Berlin 1991.

강화를 통하여서 환경법의 생태적으로 현저한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환경법에 남아있는 흠결도 보충될 수 있다.(예컨대 地表環境保全(土地保全, Bodenschutz)에서)

조화를 통한 환경법의 통일화는 실질적으로 정당화되는 개별 영역들의 특별 규정들을 제외하지 않고, 지배적인 環境法上의 手段과 法形象(Rechtsfiguren)을 일반적으로 보다 더 강하게 형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환경법의 단순화를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환경법전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단지 세 유형의 허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공간과 관련된 계획의 복합적인 허가(Zulassung)로서의 Umweltbewilligung(環境承認), 공식적인 절차에서 승낙하는 Genehmigung(認可), 공식적인 절차에서 승낙하는 것이 아닌 Zulassung(許可)

調和를 통한 환경법의 단순화는 무엇보다도 환경법의 집행에 있어 개선도 가능하게 한다. 요구 수준의 명확화라는 의미에서 한정할 수 있는 질적 목표를 강하게 규정함으로써 역시 이러한 목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조화된 그리고 분명한 환경법 규정들을 보다 잘 꿰뚫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그 구속력을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비록 현실 문제의 복잡성과 그 법률적 취급과 관련하여 國民(Volk)이 읽는 일종의 환경법 서적이라는 의미에서의 환경법전이라는 관념이 환상으로 남아 있게 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各章의 목표들과 원칙들의 規範化가 주민(Bevölkerung)에게 환경법전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법전화는 規範移植된 등의 창출 및 수락 가능성의 그러한 수단들을 근절시킬 수 없다(마찬가지로 규정들의 형태(Ausgestaltung)에 있어 타협도 근절시킬 수 없다). 環境法典은 단지 市民(Bürger)들과 기업들을 환경보호에 구속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속해서 환경보호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各論에서도 강조된 市場메카니즘의 이용에 있어 협동적이고 유연한 도구의 강화의 본질적인 기능이 놓여 있다.

그것은 개선된 環境保護(특히 環境의 事前配慮라는 강화된 영역에 있어서)를 위하여 關係자들의 기꺼이 협력할 자세와 혁신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적은 강제(그리고 적은 대가)를 통한 더 나은 環境보호는 이로써 엄격한 규정이 필연적으로는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環境법전의 본질적인 중심원칙이다.

입법 계획을 학문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草案의 주요 과제는 특수한 環境법의 개별 핵심 영역들을 環境法典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내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環境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 현존하는 環境법의 어두운 迷路에 더 많은 빛을 비추기 위해 수많은 불확정적인 것들의 극복 및 복잡한 環境법 규범의 개관과 실행의 개선 노력이 기울여졌다. 특수한 環境법 소재들의 통일화와 단순화라는 과제 외에 위 교수연구반은 동시에 현행 環境법의 개별 규정들과 제도들의 내용적인 수정 및 지속적인 발전과 현행 環境법을 새로운 요구에 부합시키는 목표를 추구했다. 여기서 개혁노력들이 곳곳에서 행해졌고, 위 교수연구반에 의하여 수정이 요구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곳에서 현행법의 수정이 행해졌다. 특히 현행법에 남아 있는 흠결의 보완이 — 그것은 地表環境保全을 다루는 第3章과 관련하여 그렇다— 두드러진다.

環境法典 各論의 草案은 특히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環境法典 總則의 구조를 통하여 각인된다. 環境法典 各論은 이미 존재하는 環境法典 總則이라는 規定複合體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그 때문에 環境법전 각론은 개별 環境법의 핵심 영역들에 특유한 특수성의 형성에 집중한다. 물론 총칙이 다른 것을 差減(Entlastung)해 주는 기능의 이용하에서, 이로써 총칙이 각론과 면밀하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법전화의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총칙이라는 전제는 각론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한 수정과 보충으로 비견할만한 규정들이 재발견되도록 핵심 영역들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일정한 구조적 동질성이 環境법전의 각 장을 특징짓는다. 各 專門領域들의 傳來된 특질은 다음에 비추어, 즉 環境법전 총칙의 일반적이고, 단일화되고 조화된 규정으로부

터의 특수한 회피가 정당화되는지, 그것이 역사적인 조건하의 특별한 발전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에 근거하는 것인지에 비추어 심사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各論의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난(herauskristallisierten) 총칙의 수정과 보충 역시 제안되었다. 그것들은 법률조문에의 추가와 각론의 근거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중심사상에 근거하여 筆者는 各論 작업 도중에 다음과 같은 작업지침적 원칙들을 끌어내었다.

- 環境法의 生態的 發展
- 單純化(Vereinfachung)와 調和를 통한 環境法의 改善
-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법의 分類的(registrierenden)이고 體系的인 파악에 근거한 법의 統一化
- 環境法上에 규정된 手段(특히 협력적이고 탄력성이 있는 수단)들의 주의깊은 지속적 발전
- 逆行禁止, 최소한 환경법의 현재 보호 수준의 유지
- 法典編纂의 법정정책 발전에의 조화
- 제안들의 장래 공개
- 總則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의 원칙적인 고려
- 유럽 환경법에의 適應
- 狹義의 환경법 즉 환경과 관련된 법이 아닌 환경에 특유한 법에의 제한

2. 草案의 對象

學問的 草案의 對象은 州法이 아닌 聯邦의 環境法이다. 基本法上 현존하는 權限과 규정된 그 權限의 사실상의 이용에서 출발한다. 위 교수연구반의 소견에 따른 연방권한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그것이 聯邦法과 州法 사이의 개개의 배분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환경법을 통하여 주어진 국내법의 확장된 형성공간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화로운 편입의 방법으로 각론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各論의 체계적 조직의 형성은 많은 부분이 聯邦環境廳과의 계약적 틀에 의하여 위 교수연구반에 주어져 있었다. 더불어 일정한 龜裂 속에서 統合的인 성과물을 추구해야 하는 목표도 있었다. 가령 문제가 없지 않은 遺傳工學의 한계와 관련하여 각론의 규정영역 범위도 역시 계약적으로 주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草案은 환경법의 핵심영역만을, 따라서 환경관련적 규정들(예를 들면 교통법이나 건축법)이 아닌 단지 환경에 고유한 법만을 파악했다.

이 草案은 現代的 環境法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 草案은 그 심의를 종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1993년의 법정책적 상태를 거의 기록하는 식으로만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現行 環境法의 調和라는 틀에서 물론 법정책적 발전이 무시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 위 교수연구반의 목표는 이 개혁노력을 가치모순이나 균열 없이 각론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대상의 범위와 복잡성과 관련하여, 이 草案의 작업에 있어서 환경법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데 시대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불가피했다. 현행 법률의 수정, 새로운 법률 혹은 유명한 법률안, 특히 새로이 효력을 갖게 된 유럽공동체의 규정들과 지침들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章에 有效한 施行日字 規定(Stichtagsregelung)이 위 교수연구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2월 1일 이후에 효력을 갖는 법은 이 草案에서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다. 물론 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식물보호법에서처럼— 草案은 그 시행일자 규정을 무시했다.

3. 草案의 작성시의 작업방법과 문제

學者研究그룹(教授研究班)의 研究는 동료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연구그룹의 개별적인 구성원을 통해 얻어진 法條文이 총회에서 條別로 項別로 토론되었다. 여러 번이 넘는 草案에 대한 研究會議 중에 개별 규

정의 심의가 대부분 계속되었다. 법조문은 공동으로 작업하여 만든 데 대하여 개개의 연구작업이 論據提示를 담당했다. 연구그룹의 각 구성원에게 논거제시의 부담이 놓여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논거제시는 대충대충만으로는 토의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各章의 근거가 各 研究者의 專門責任으로 歸着한다⁴⁾는 사실이 밝혀진다.

草案의 작성시 문제는 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로 안전을 위한 연방장관(연방환경장관, BMU)의 환경연구계획에 의하여 내세워진 (먼저 가결된) 環境法典의 總則과 (그 후에 이루어진) 環境法典의 各論 作業의 시간적 구분의 결과로서 생기고 아울러 양쪽 연구 그룹 사이의 一致 缺如로부터 문제가 생긴다. 環境法典 各論의 연구그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법전 총칙에 의지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과연 있었다. 그렇지만 각론의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 특수한 경우에 총칙의 문제되어 있는 규정이 사정에 따라서는 보충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現行 聯邦環境法の 作成(加工, Verarbeitung)은 부분별 專門法の 전통적으로 제한된 특징에 특히 의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
- 4) 공적인 의회 의사록에 들어 있는 입법이유제시에 비하여 환경법전 각론의 이유제시는 진일보된 것이다. 그 이유제시는 환경법전의 총칙을 모범으로 하여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시작할 때의 상황

1. 규정범위의 대상
2. 이제까지의 法狀況
 - a) 법상황
 - b) 이제까지 법에 있어서의 경험
 - c) 개혁논의
3. 大綱的 條件
 - a) 유럽공동체법
 - b) 헌법

II. 제안

1. 중심사상
2.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存續規定(bestehenden Regelungen)의 조화시의 모순은 개별환경법의 각 부분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규범화 정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규범 계층 즉 현행 환경법의 각 부분에 있는 법률, 명령 그리고 행정규칙 영역의 통일성 결여에서 특히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영역별로 매우 다른 유럽 법에 미리 규정된 것(vorgabe)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그 때문에 草案은 모든 章에 있어서 통일적 규정 수준을 추구한다. 따라서 (예컨대 원자력법에 있어서 특별히 현저한 것처럼) 중요한 결정들은 이제까지의 명령수준으로부터 법률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반면에 덜 중요한 규정들은 명령수준으로 낮추었다.

II. 環境法典의 內容 - 各論

1. 法典編纂의 構造 - 環境法 各論(UGB-BT)의 포괄적 규정과 내용

광범위하게 미치는 内部調和에도 불구하고 個別 環境法의 취급 범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草案의 各論의 各章의 독자적인 구조가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특히 各章의 첫번째 節과 마지막 節에서 특히 그런 경우이듯이, 各章의 형식적으로 보이는 통일성을 가능한 限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各論의 모든 章의 첫번째 節은 目的 規定과 나란히 概念 規定과 原則 規定을 두고 있다. 目的 規定은 적용자에게 各章의 근본이 되는 실체적인 고려를 압축한 형태로 눈 앞에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집행능력이 없는 目的 規定은 各章 바로 뒤의 규정의 해석에 도움을 준다. 總則 제2조에 있는 개념규정에 보충하여 各論에서는 풍부한 法律上의 定義가 수용되어졌음에 틀림없다. 이 概念規定은 당해 章에 특수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구속력있게 定義한다. 各章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괄호 앞으로 끌어내어 졌다.

그 밖의 章의 各節에서 어느 부분은 자세한 法定의 定義 — 보통 所謂 括弧 定義로서 — 가 있다. 여기에 있어 소수의 규정의 범위에서만 이용되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념은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章의 첫 번째 節의 定義部分이 概括의임과 差減的의임(Entlastung)이라는 이유에서 확인된다. 效力 範圍(Geltungsbereich)에 관한 규정은 당해 章의 객관적인 효력 범위를 확정한다. 이 규정은 各論의 各章의 적용범위의 필요한 내부 조화를 분리하기 위하여 各論의 各章의 부분적으로 내용적인 뒤엎김(Übersichtlichkeit)에 직면하여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 原則은 당해 章의 목표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은 목표규정과 똑같이 독자적인 규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그러한 목표규정과 마찬가지로 집행능력이 없는 규정이다. 各章의 개념적 기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칙은 의미를 가진 개별 章의 다른 규정과 관계가 있다. 특히 목표규정과 관계가 있다. 모든 章의 목적은 私的 行動이 환경의무를 지고 있다는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촉진된다. 특히 이 義務構成要件은 환경의무의 警告 機能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일부는 이른바 指針(Leitlinien)이 제1절에 있다. 그 지침은 公權力의 主體에게 향한다. 그 지침은 의무규정을 정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의무구성요건을 결정한다.

모든 章의 마지막 節은 各 秩序違反規定을 포함한다. 包括的이고 狀況關聯(Sachzusammenhang)的이라는 이유에서 질서위반에 관한 독립된 章의 확립이 도외시되었다. 그와 반대로 — 環境法典 總則(UGB-AT)에서 이미 규정되었듯이 — 특히 형법전에서의 체계적 이유 때문에 환경 특유의 형벌규정이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 절에는 오래된 기초시설에 관한 원칙 규정 및 관계 규정,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원칙 규정 및 관계 규정, 우선 첫째로 절차 규정 및 조직 규정에 대하여 어느 章 속에도 더 자세한 節이 들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 연방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부가하는 환경법 규정에 그러한 聯邦上級公共機關(Bundesoberbehörden)을 수용하는 총칙에서 추구된 조항은 각론

에서 환경특유의 과제에 관한 규정과 다른 部의 권한에 속하는 다른 공공기관(Behörden)의 관할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끝난다. 환경법전 편찬을 통한 환경법의 조화가 총칙에 대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구체화되어 전개된다. 이것은 환경법 각론에서 예를 들어 開始統制(Eröffnungskontrollen)규정에 관해서 나타난다. : 환경법 총칙 규정은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설명되는 各論의 章에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각론의 각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전환을 필요로 하는 環境承認(Umweltbewilligung)은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예외를 형성한다. 환경특유의 開始統制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은 제2장, 제4장, 제5장 그리고 제7장의 開始統制라는 규정에서 引用되어졌고 고려되는 규정에 의하여 各論의 규정을 위한 總則의 差減機能이 본보기로서 명백해졌다.

環境承認의 아래쪽의 開始統制를 위하여 草案에서는 다음의 專門用語가 사용된다. : 認可(Genehmigung)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얻은 許可(Zulassung)로 이해되고, 許可(Erlaubnis)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許可(Zulassung)로 이해된다. 許可(Zulassung)라는 개념은 許可(Erlaubnis) 또는 認可(Genehmigung)로서의 분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용되는 上位概念(Oberbegriff)이다. 이 용어는 각론의 모든 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이 점에 있어서 예외는 언어상의 이유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예컨대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Pflanzenschutzmittel)는 전통적으로 認可받음(genehmigt) 수도 許可받음(erlaubt) 수도 없고 단지 許可받음(zugelassen) 수 있을 뿐이다.

2. 各 章의 內容

환경법전의 各論은 환경특유의 法, 그 뿐만 아니라 환경에 중요하지 않은 법까지 포함하여 연방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專門法의 규정범위를 포괄한다. 地表環境保全法이라는 지금까지 아직 연방법에 규정된 소재가 아닌 것을 法制化한 것이 특히 새롭다.

總 429條로 된 포괄적인 환경법의 각론은 다음과 같이 8개의 章으로 세분된다. :

- 제1장 자연보호와 風景保護(제170조 - 제221조)
- 제2장 하천보호와 수자원관리(제222조 - 제282조)
- 제3장 地表環境保全(土地保全, 제283조 - 제313조)
- 제4장 임미시온방지(제314조 - 제376조)
- 제5장 핵에너지(원자력)와 방사선보호(제377조 - 제483조)
- 제6장 위험물질(제439조 - 제558조)
- 제7장 폐기물관리와 폐기물처리(제559조 - 제597조)
- 제8장 부칙(제598조)

環境法 各論의 條文 연속은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 제170조부터 시작되고 제1조부터 제169조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 총칙에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 각론에 있어서 각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 自然保護와 風景保護(Landschaftspflege)
(제170조 - 제221조)

자연보호와 풍경보호에 관한 각론의 제1장은 본질적으로 연방 자연보호법에 터잡은 구조를 수용하고 있고 自然(자연관리, Naturhaushalt)의 전체적인 보호법으로 계속 발전된다. 특별한 상황에 한정된 以前의 보호개념에 의존하는 發展 遲滯는 補整된다. 제1절(제170조 - 제177조)은 통칙, 즉 환경법의 결정적 규정과 관련하여 자연보호와 풍경보호의 입장을 규정한다. 제170조에 있는 목적규정의 핵심은 전체적인 자연관리보호로서의 자연보호와 풍경보호의 강조이다. 농업에 관한 定義가 소개된다(제171조 제2항). 자연보호는 — 현행법에서 지배적인 형량규정(Abwägungsdirektive)에 비하여 — 수량을 정할 수 있는 미리 규정된 것에서 더욱 더 명확히 확정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체적인 자

연관리보호의 원칙내에서 環境質 目標에 대한 달성이 명확히 제시되고(제172조), 動·植物의 生活空間體制(Biotopsystem)에 있어서 자연보호를 위한 上位平地(Vorrangflächen)로서 州平地의 최소 10%확정이 의무로 되었다(제173조). 모든 사람을 위한, 예를 들면 농업 그리고 임업 등과 같은 각 이용권자그룹을 위하여 구체화되는(제175조) 일반적인 자연보호의무는 지금까지 보다 더 명확하게 강조된다(제174조). 농업과 임업의 지위는 새로이 정해진다. 지금까지의 農業留保條件(Landwirtschaftsklauseln)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자연보호와 풍경보호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의 風景의 休養機能은 더 이상 定義되지 않는다(제176조). 제177조는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öffentlichen Hand)의 토지평지(Grundflächen)를 위한 특별한 자연보호의무를 규정한다.

제2절(제178조-제186조)의 대상은 일반적인 자연보호법과 풍경보호법의 수단이다. 이 절은 계획, 자연과 풍경에서의 침해 그리고 보호라는 3개의 款(Unterabschnitt)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경계획은 환경법 총칙(제19조-제25조)의 3단계의 환경중심계획(Umweltleitplanung)에서 나타난다. 草案은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자적인 수단의 중요성의 강조에로의 경향에 관심을 가진다. 그런 까닭에 제178조의 규정은 자연보호에 특수한 보충(건축계획에 있어서 녹지정리계획 연구소와 그 연구소의 통합에 대한 비난)에 국한될 수 있다. 자연보호법상의 침해규정은 엄밀하게 규정되고 강화되었다. 大綱法(Rahmenrecht)의 성격에 대해 연방법상 미리 규정된 것(Vorgaben)의 제한은 유지되었다. 草案은 聯邦自然保護法(BNatSchG) 제8조에서 집결되어 뒤엉켜진 규정대상을 법체계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침해개념(제179조), 적용범위(제180조), 의무체계(제181조) 및 절차(제182조). 제183조에서 직접 구속력이 있는 연방법을 통하여 건축법(Baurecht)에 대한 침해규정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제3款 保護(Pflege)에서는 보존 의무와 보호의무(Unterhaltungs- und Pflegepflichten)가 유지되고 조심스럽게 확대된다. 제184조는 연방자연보호법 제10조와 일치하고, 제185조는 연방자연보호법 제11조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보호조치와 발전조치가 완전히 일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限, 그 보호조치와 발전조치가 완전히 일반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연방법상의 의무구성요건을 제186조는 확대한다.

제3절(제187조-제196조)의 대상은 특별자연보호법과 풍경보호법(특별 동·식물의 생활공간 보호 및 평지 보호)의 영역에 관련된 수단이다. 第1款(제187조, 제188조)은 자연보호법 제20조c와 법률개정안에 터잡아 법률 직접적인 동·식물의 생활공간보호를 다루고 있다. 동·식물의 생활공간 보호규정은 種保護와 관련하여 해결되고 영역 보호의 독자적인 대상으로 입증된다. 제187조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생활공간의 목록작성과 그 보호 기준에 대한 기본판단을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는 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위한 확대된 행동프로그램(Handlungsprogramm)과 동·식물의 생활공간 보호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 가능성을 규정한다. 第2款은 영역증명(Gebietsausweisungen)을 통하여 특별 평지보호를 다룬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개별적 보충[보호측면(Schutzprofile)의 명료화, 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주위환경에서 영역증명가능성의 확장, “生物生活圈公園(Biosphärenpark)”이라는 領域範疇의 收容]을 하게 되었다.

제4절(제197조-제210조)은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이 자연적이고 역사적으로 자란 다양함속에서 그들의 보호를 다룬다. 제5절(제211조-제213조)은 먼저 자연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地表環境(土地, Boden)政策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에 損害賠償規定과 補償規定을 두고 있다. 通則(Gemeinsamen Vorschriften)의 범위 내에서 제6절은 여러 종류의 규정대상을 통합한다(제214조-제221조). 公共機關管轄權(제214조)과 制裁規定(제219조) 등과 나란히 이른바 계약상의 자연보호가 법률에 규정되게 된다(제215조). 단 체 참가를 위해 이미 환경법 총칙 제131조 이하에 상응하는 규정이 강화된다(제216조). 부가하여 州에게 자연보호법적 단체소송의 도입이 연방법상의 의무로 되었다(제217조).

제2장 河川保護와 水資源管理(제222조 - 제282조)

수자원 관리권을 포함하는 제2장은 원칙적으로 건축과 수자원 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 WHG)규정에서 유래하고 일련의 법률개정이라는 체계적인 정리에 의해서 보충된다. 폐수방출수단이 규정범위에 포함되었다. 草案에서 聯邦과 州사이에 존재하는 권한 상태가 원칙적으로 충실히 유지되었다. 포괄적인 자연보호법의 범위 내에서의 水利法(水資源法, Wasserrecht)이 개념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水利法은 출발부터 새로 추가된 地表環境保全法(土地保全法, Bodenschutzrecht)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보호법과 특별한 방법으로 연결되었다.

제2장은 총 10절로 나뉜다. 제1절(제222조 - 제228조)은 수자원 관리정책의 기초와 河川(湖沼, Gewässer)利用의 통제수단 및 개념규정 등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생소한 하천보호에 해당하는 章의 목적규정이 첨가되었다(제222조). 수자원관리법(WHG)에 근거한 하천관리의 체계는 앞으로 더 명백히 되고 보충될 것이다. 관리위임(Bewirtschaftungsauftrag)을 실행하는 형식으로서 비공식적인 관리 개념이 공식적인 관리 계획과 더불어 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제225조). 州의 水資源公共機關(Wasserbehörde)에 대한 관리 위임은 원칙에 의하여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된다(제224조). 농업과 임업의 하천보호의무가 규정되었다(제227조). 그 외에도, 수자원관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량경제적 및 품질경제적 최저상태(mengen- und gütewirtschaftliche Mindestzustand)가 침해될 때, 州水利施設이 설치된 곳에서 州는 강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제228조). 開始統制를 제2절에서 다룬다(제229 - 제241조). 제229조 제1항의 허가유보(Zulassungsvorbehalt)는 수자원관리법(WHG)에 도입된 법적 상황을 이어 받고 있다.

存續保護를 가져다주는(bestandsschutzgewährende) 수자원 이용권을 위하여 환경법 총칙 제52조 이하에 따른 환경승인(Umweltbewilligung)에 대한 규정을 구속적인 통제허가(Kontrollierla-

ubnis)로 관련시키고 그러나 동시에 일련의 예의를 통하여 수자원법 규정들의 특수성들, 가령 水資源公共機關이 가지고 있는 관리재량(Bewirtschaftungsermessen)과 같은 것을 고려할 것이 제안되었다. 관리재량을 통하여 開始된 포괄적인 정치적 形成(Gestaltung)의 가능성과 투자위험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의 투자위험에 상응할 정도로 비교적 큰 보호필요성은 환경법 총칙 제56조와 제76조에 있는 척도에 반대하여 환경승인의 존속보호와 존속효력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쪽으로 이르게 한다(제236조). 제239조는 허가(Erlaubnis)를 규정한다. 제3절(제242조-제254조)의 대상은 地上河川에 대한 규정이다. 현존 규정들을 이해하기에 더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하천 종류에 대한 관리목표들이 어떻게 상호간에 구별되는가 하는 것이 더욱 더 명백히 제시되었다. 관리위임의 체계적인 통일성이 전체적으로 구상되었다. 제4절(제255조-제256조)은 領海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통제목적은 지금까지보다 더 분명히 해석된다. 本土와 公海 사이에 있는 領海의 過渡機能(Übergangsfunktion) 및 그들(본토와 공해) 상호간의 의존을 고려하는 일련의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地下水를 위한 규정이 제5절에 들어 있다(제257조-제261조). 다양한 종류의 지하수를 위해 표준적인 관리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다. 水害의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wassergefährdender Stoffe)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송관 시설의 건설 및 판매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인 水利法의 許可(Zulassung)體制에 편입되었다. 제6절(제262조-제263조)은 수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법을 다룬다. 하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기준과 안전요구는 각각 제2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州가 명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상세규정의 포기여 의하여 현행 연방법은 差減(相殺)되었다. 제7절은 지역과 관련된 하천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수자원보호지역에 관한 규정(제264조)은 수자원관리법(WHG) 제19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제8절(제265조-제270조)은 執行(Vollzug)과 환경대리인(Umweltbeauftragte)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다. 그

밖에 협동의 원칙(Kooperationsprinzip)의 중요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계약상의 협정의 가능성을 예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제268조).

제9절(제271조 - 제281조)은 環境公課金(Umweltabgaben)에 관한 통칙이 들어 있는 環境法總則 제77조 이하에 더잡아 廢水賦課金(Abwasserabgabe)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것은 현행법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확인된다. 물론 草案은 현행법과 달리 현저하게 差減(相殺)되고 명령수준에서 예컨대 公課金媒介變數(Abgabeparameter)와 같은 상세규정이 요구된다.

제10절은 수자원관리법(WHG) 제41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법령위반구성요건(Ordnungswidrigkeitentatbestände, 제28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地表面環境保全(土地保全, Bodenschutz, 제283조 - 제313조)

제3장은 종합적인 地表面環境保全法の 연방법 차원에서의 통일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聯邦次元의 單一의 地表面環境保全法の 不在를, 또 한편으로는 環境媒體에 관한 법분산에 대해서 효과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3의 環境媒體인 地表面環境을 단지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호하던 종래의 입법자의 태도는 중지된다. 地表面環境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타의 환경매체인 물과 공기와 같은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제1절(제283조 - 제286조)은 제3장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개념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제286조에서는 地表面環境의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83조는 제3장의 목적규정을 담고 있는데 “목적달성을 위한 手段: 地表面環境保存(Bodenerhaltung)措置, 地表面環境整備措置, 事前措置等”이라고 부른다.

地表面環境의 조절기능(Regelungsfunktion), 생산기능 그리고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보호된다. 가능한 限 포괄적인 地

表環境保全에 관한 측면에서 地表環境에 대한 廣義의 개념이 기초로 되어 있다(제284조). 적용범위(제286조)에 있어서는, 특수한 입법관념에 속하는(예컨대, 자연보호법, 하천보호법, 폐기물처리법상의) 地表環境保全의인 증대성을 지닌 기준들이 입법구조 내에 남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또한 이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2절(제287조-제302조)은 地表環境保存法(Bodenerhaltungsrecht)을 다루고 있다. 이 절의 세분화는 地表環境保存에 기여하는 다양한 조치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절은 量的 및 質的 地表環境保全, 地表環境監視, 地表環境侵害領域, 地表環境狀態의 파악 및 감시 그리고 기타 법률의 허가절차상에서 地表環境保全을 위한 關係 公共機關의 협조 등을 다루고 있다. 地表環境保存義務(건축법 제202조 참조)는 제287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원래의 목적을 위한 地表環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 地表環境의 開封(Entsiegeln)을 위한 원칙적인 義務를 규정하고 있는 原狀回復義務(Wiederherstellungspflicht, 제2항)는 새로운 것이다. 제288조는 피할 수 있는 地表環境汚染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과 임업상의 地表環境利用을 위해 제289조에서 상술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특수한 물질의 조달(제290조)과 화학비료(제291조) 및 식물보호약제(Pflanzenschutzmittel, 제292조)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 地表環境監視에 관한 규정들(제293조 이하)은 환경법 총칙 제57조 이하의 규정들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差減된다.

영역확정의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地表環境侵害의 확정은 제297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목적은, 예를 들면 자연보호영역 혹은 수자원보호영역과는 대조적으로, 예방적 환경보호가 아닌 현존하는 환경의 “復舊(Reparatur)”에 있다. 환경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 법규명령으로 — 영역의 분할 증명(parzellenscharfe Ausweisung des Gebiets)이 허락되어야 한다. 제297조는 손해배상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州法(Landesrecht)으로 넘어와서 확고히 된다. 보다 광범위한 규정은 地表環境臺帳(土地臺帳, 제298조), 지속적인 관찰을 받는 평지(Dauerbeobachtungsflächen,

제299조), 地表環境試驗銀行(土地試驗銀行, 제300조) 등의 제도에 관한 것이다. 오염된 地表環境과의 관계는 地表環境整備와 地表環境安全에 관한 제3절(제302조 - 제311조)의 대상이다. 地表環境汚染(Bodenbelastungen, Bodenverunreinigungen)과 地表環境의 有害化(有害土質化, Altlasten)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제3절은 地表環境汚染과 有害土質化에 대한 완전한 復舊法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草案은 Hessen지방의 有害土質復舊法(hessischen Altlastensanierungsrecht)을 근거로 하고 있다. 地表環境汚染에 대한 복구법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제302조 - 제307조), 有害土質復舊法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이 규정들이 원용되고 있다(제310조). 이와 같은 원용은 有害土質化이 원칙적으로 시간적인 經過法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復舊義務의 범위(제302조), 복구책임에 관한 자세한 규정(제303조), 비용부담, 妨害者(Störern)가 多數인 경우에 있어서의 選擇權(제304조), 공공기관의 독자적처리권(Recht der Eigenvornahme) 및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의무(제30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草案은 복구되는 地表環境의 價値增大(Wertzuwachs)를 對象으로 하는 규정은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相應하는 州法上的의 규정이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有害土質復舊會社(Altlastensanierungsgesellschaft)의 創設에 관한 규정이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有害土質復舊會社의 主體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州에게 비교적 넓은 裁量의 餘地(Spielraum)가 인정되어 있다. 公課金의 일부분이 有害土質復舊를 위해 사용되는데(제595조 제1항 4호) 草案上的의 廢棄物公課金(Abfallabgabe)은 제7장(廢棄物處理)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규정되어 있다(제590조 - 제595조). 제4절(제312조 - 제313조)은 적용대상에 대한 통칙을 담고 있다. 제312조는 TA - 지표 환경(Boden) 즉 危險(Risiko)과 危險價値(Gefahrenwerten)의 확정에 대한 授權根據를 담고 있고, 제313조는 법령위반구성요건을 담고 있다.

제4장 임미시온防止(제314조 - 제376조)

제4장은, 지금까지 州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던 순수한 行爲 關聯 임미시온防止는 제외한 채, 제1차적으로 임미시온防止에 기여하는 모든 공법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임미시온防止法(BImSchG) 제35조 이하에 포함되어 있던 임미시온防止法上の 物質關聯規定들은 체계상의 이유로 危險物質法(Gefahrstoffrecht, 제6장)에 歸屬된다. 현행의 법상태에 상응해서, 마찬가지로 産業災害防止(Arbeitsschutz)와 민법의 일반규범인 민법 제906조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산업재해방지 영역은 제외되었다. 草案은 保護對象으로서 公衆(Allgemeinheit)과 隣人(Nachbarschaft)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대신 단지 인간중심적인 지향의 회피하에 人間, 事物(Sachen), 環境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314조). 기후보호(상황보호, Klimaschutz)에 대해서는 상당한 가치가 부여되도록 힘쓰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조항은 없지만, 임미시온방지법은 기후보호를 제2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때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가 기후보호와 관련되어 있다(제317조 제1항 3문). 제1절(제314조 - 제317조)은 임미시온방지법의 모든 세부영역들에 의미가 있는 통칙을 포함하고 있다: 제4장의 목적규정, 개념규정, 적용범위 및 제4장의 기본원칙들. 개념규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법의 중심개념이었던 “有害한 環境作用(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이라는 개념이 誤解의 素地를 拂拭시키기 위해서 “有害한 임미시온”으로 대체된다(제315조 제5항). 제2절(제318조 - 제356조)은 시설관련 임미시온防止와 관련되어 있다. 草案은, 要認可施設이라는 개념이 要許可施設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限, 개념적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때 許可(Zulassung)라는 개념은 環境承認(Umweltbewilligung)에 대한 上位概念이다(제329조 제1항). 연방임미시온防止法에 散在해 있던 지금까지의 요허가시설에 관한 법들은 하나의 節로 통합되고 다시 네 항목(Titel)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법과는 전혀 다른 규정순서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항목(제318조-제320조)에서는 허가와는 관계없이 시설운영자가 주의해야 할 사물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항목(제321조-제328조)은 허가가 필요할 때를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제329조-제333조)은 허가절차와 허가효력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법과는 달리 간소화된 절차규정이 예전의 절차규범에 관한 규정과 결부되어 있다. 네 번째 항목(제334조-제336조)은 종국적으로 사후조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要許可施設에 관한 草案은 環境法 總則의 差減機能에 의해 매우 강하게 刻印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률상의 일련의 규정들은 환경법 총칙상의 규정을 토대로 포기될 수 있었는데, 가령 아직 소재지에비결정(Standortvorbescheid)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비결정(Vorbescheid)에 관한 연방임미시온防止法 제9조의 규정(환경법 총칙 제53조 제2항 참조), 환경법 총칙 제55조 제1항으로 대체된 연방임미시온防止法 제14조의 除權規定(Präklusionsregelung), 환경법 총칙 제74조, 제75조에서 발견되는 연방임미시온防止法 제20조의 禁止權限(Untersagungsmächitigungen) 또는 환경법 총칙 제76조 제2항과 제3항(연방임미시온防止法 제21조)의 적법한 허가의 취소규정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서 草案은 환경결과평가로부터 발생하는 요구들을 보다 강력하게 고려하려고 한다. 제3절(제357조-제365조)은 交通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교통수단(차량)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와 교통로와 관련된 임미시온防止로 세분된다. 그 실제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빈약하고 단편적인 교통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規定들이 삭제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교통임미시온의 제한에 관한 광범위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균형있게 시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제359조). 교통로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問題는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도로, 철도 그리고 공항 등이 포함되어 규정되었지만 항공기소음법의 규정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행장건설시 임미시온防止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항공법상의 규정들도 포함된다. 제4절(제366조-제379조, 여기서 표기된 제379조

는 제370조의 오기인 듯?, 각론의 부록⁵⁾에는 제370조로 표시되어 있음은 영역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를 규정하고 있다. 자료조사에 관한 현행법상 유력한 규정들은 措置(Maßnahmen)에 대하여 미리 규정된 것(Vorgaben)의 확장을 위해서 空間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에 한정된다. 空氣의 純粹狀態保存計劃과 騒音減少計劃(Luftreinhalte- und Lärminderungspläne)에 관한 규정들(제367조 이하), 교환이 잘 안되는 기상상황(austauscharmer Wetterlage)의 경우와 공기오염(Ozonbelastung) 등의 경우에 있어서 조치에 관한 규정(제369조) 및 空氣質 基準値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370조) 등이 있다. 제5절(제371조-제376조)은 통칙을 담고 있다. 설비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가장 넓은 의미로 관련된 공공기관은 동시에 임미시온防止法の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된다(제371조). 제372조는 관계 공공기관에 비공식적인 협약 대신에 조사를 위한 공식적인 계약체결과 위탁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原電事故(Störfall)委員會에 관한 규정(제373조), 施設安全에 대한 기술위원회에 관한 규정(제374조), 老朽施設(Altanlagen) 및 법령위반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제5장 原子力과 放射線 保護(제377조 - 제438조)

제5장은 이를테면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ionisierender Strahlen)의 평화로운 이용과 같은 원자력보호법과 방사선보호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폐기물처리문제(Entsorgungsproblematik)를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력획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환경보호의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원자력법은 진보적인 보호법 및 안전법(Schutz- und Sicherheitsgesetz)으로서의 선도자적 지위를 벌써 오래전에 상실했다. 원자력법은 항목별 개정을 제외하면 지난 15년 동안 대체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草案의 목표는 원자

5) 譯者 註, 본 번역문, 38면 참조

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진흥법의 마련이 아니라 원자력법과 방사선법을 기술적 안전법(technischen Sicherheitsrecht)안에 있는 현대적인 보호법률(modernen Schutzgesetze)의 규범적·기술적인 발전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제5장은 원자력의 유용성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면서 출구특권 내지 출구선택권(Ausstiegsprärogative oder -option)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제5장은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보호법은 부분적으로 임미시온방지법의 중요한 구조에 조심스럽게 맞추어 졌다. 그래서 원자력법의 지금까지의 특별한 역할이 상대화되었다.

제1절(제377조-제379조)의 대상은 통칙, 특히 방사선보호의 목적규정(제377조), 개념규정(제378조) 및 諸原則(제379조) 등이다. 이러한 도입부에 있는 節은 현행 원자력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후원원칙(Förderprinzip)을 특별히 확고하게 하는 것은 누락되어 있다. 원자력법에서 지금까지 결여되었었고 명령 수준에만 일률적으로 규정된(방사선보호령 제28조 제1항) 제379조의 방사선보호의무는 새로 도입된 것이다.

제2절(제380조-제408조)은 현행법에 있어 開始統制 構成要件 및 감시의 통일적이지 않고 일목요연하지 않은 체제를 다룬다. 구속적인 허가결정과 拒絶裁量(Versagungsermessen)을 지닌 원자력법상의 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별이 더 이상 견지되지 않는다. 허가 구성요건과 인가 구성요건은 핵원료와 그 밖의 방사능이 있는 물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론 법률적인 수준(특히 제407조 이하를 비교하라)에서 통일성 있게 분리되어 규정된다. 기초 시설과 최종처리장, 시설의 폐쇄에 대한 허가를 위한 또는 시설의 본질적인 변경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환경승인(Umweltbewilligung, 환경법총칙 제52조 이하)제도가 이 경우에 떠맡게 된다. 지금까지 放射線保護令으로 파악된 인가구성요건이 法律的인 수준으로 格上되었다(제409조 이하). 허가 부여 또는 인가 부여의 규범적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 더욱 더 체계화되고 보다 더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다. 제3차 보호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경영자의 정기적인 감사의무가 법적 근

거를 지니게 되었다(제398조). 현행법과 반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追後負擔에서 고려되지 않게 된다(제399조). 廢棄物處理(Entsorgung) 분야에서 방사능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국가적 “행정독점”의 붕괴하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최종 처리의 민영화를 통한 원인자책임의 원칙(Verursacherprinzip)이 광범위하게 관철되었다. (방사능폐기물의) 재처리 작업(Wideraufarbeitung)과 방사선 폐기물의 직접적인 최종처리는 등급이 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제386조). 원자력법과 방사선보호법의 執行에 있어서 委任行政(Auftragsverwaltung)은 연방직할 행정(독일 기본법 제87조 제3항)의 확립을 위하여 지지되지 않는다. 원자력법과 방사선보호법의 집행 중 연방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나머지 분야에서 州 자신의 책무로서 州 집행이 개시되었다.

제3절(제409조 - 제412조)의 대상은 방사선보호 예방조치이다. 방사선보호예방조치규정은 정보획득과 정보가공이라는 단독 규정에 국한된다. 草案은 방사선보호예방조치법(StriSchVG) 제6조 이하와 限界値決定(Grenzwertfestsetzung)에 대한 授權(Ermächtigung)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잠재적인 보호조치와 독자적인 규범 통일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4절(제413조 - 제432조)은 모든 안전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물질이나 원자력시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현행법, 특히 원자력법 제25조 이하, 의 근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비해서 더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원자력 책임법과 填補準備法(Deckungsvorsorgerecht) 개정에 대한 현재 논의에 따라서 本 草案은 책임에 대한 비용의 조달을 강조한다. 私的인 填補準備 및 국가위임(staatlichen Freistellung)의 최대한도는 손해의 범위 때문에 보험시장의 증대된 수용능력에 의해서 현재의 13억 마르크에서 50억 마르크로 인상되었다(제430조 제3항). 개별적 경우에서 확정된 填補準備가 私的인 수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총액을 넘어서는 限, 후원목적의 붕괴와 동시에 국가위임에 의거한 정당화 근거가

원자력법 제34조에 포함되기(제430조 제4항) 때문에 補償義務가 있는 聯邦填補의 도입이 규정되어 있다. 어떤 시설의 중지와 폐지를 위한 재정적 수단이 언제나 존재하고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중지준비 과정이 생기게 된다.

제5절은(제433조 - 제438조)은 통칙으로서 컴퓨터자료비밀보장법(Datenschutzrecht) 규정, 이를테면 원자로안전위원회(PSK), 방사선보호위원회(SSK) 그리고 핵기술위원회(KTA) 등과 같은 경과규정과 나란히 법령위반(불법) 구성요건(Ordnungswidrigkeitentatbeständ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6장 危險物質(제439조 - 제558조)

제6장은 식물보호법, 해충박멸법, 洗劑法, 위험물질운송법을 포함한 전체 물질법의 아주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물질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기물법과 임미시온방지법의 물질관련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용자 보호에 기여하는 의약품법, 식품법, 사료법의 영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草案은 화학약품법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1절(제439조 - 제443조)에서는 화학약품법의 규정에 기대어 규정의 목적, 핵심적인 개념규정 그리고 이 章의 적용범위가 규정되고 있다(제439조 - 제441조). 제442조에는 위험물질법의 중요한 개혁으로서 화학약품에 대한 안전정책의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그 법률의 위험정책도 (예를 들어 특히 예민한 성질, 물질에 의한 전체 오염의 지속적인 감축, 특별히 위험한 물질의 대체를 고려하여) 당연히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집행자의 처분에 따르는 정책적 원칙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재량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으로 격상된 지침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지침들의 필요성은 위험물질법이 매우 보충이 요구되는 법이고 중요한 결정들은 법률적 수준이 아닌 명령적 수준에서 내려진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제2절(제444조 - 제452조)에서는 新物質의 申告節次와 평가의 개요를 포함한 제조(Zubereitungen)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草案은 현행법에 비하여 신고된 新物質에 대하여 신고관청(Anmeldestelle)의 긴급조치(Eilmaßnahmen)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근거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통과 사용의 엄격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제451조). 제452조에서는 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넓은 평가의 개념은 평가의 규정(Regelung der Bewertung)에 대한 一般行政規定(Allgemeinen Verwaltungsvorschrift)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실무와 부합하는 것이다. 제3절(제453조-제457조)은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특징, 제조 및 제조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에 철저하게 의존하여 대체적으로(유럽) 공동체의 위험물질 지침 및 제조 지침 등을 통하여 결정된 규정들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적 요구들이 보다 강한 표현력(Aussagekraft)을 갖게 되는 포장과 표지의 종류 및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에 의하여 확대되었다. 인간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요약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조치 표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제454조). 이로써 取得者(Erwerber)는 그 물질을 다룸에 있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처들을 계획하고 실현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제4절(제458조-제464조)의 대상은 위험제품에까지 확대된 전달, 통지, 보고의무이다. 포괄적인 환경오염 분석의 실행을 가능케 하는 草案은 새로운 것이다(제464조). 이 생산품 지침 분석은 전달, 통지, 보고의무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물질, 제조, 제조물의 획득 그리고 원물질의 획득과 폐기물로서 처리하기까지의 에너지 투입을 포함한 생산의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전체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절(제465조-제471조)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위험물질의 재생, 유통,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및 특히 산업재해방지법상의 권한(arbeitsschutzrechtliche Regelungsbefugnisse)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물질 전체와 일반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제조 혹은 제조물과 관련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는 授權의 근거도 허락되고 있다. 物質法上の 규

정들은 법규명령을 통한 폐기물의 예방과 환경적합적 처리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제468조). 제6절은 실험실지침(Gute Laborpraxis)에 관한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세밀한 규정들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법규명령 수준으로 격하되어 있다(제472조). 제7절(제473조-제479조)의 대상은 절차와 공공기관 조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혁은 위원회의 참여를 평가와 위원들의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제8절(제480조-제514조)은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허가절차, 유통, 식물보호약제의 이용 및 식물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草案은 현행법에 비하여 체계적인 관점에서(加盟國들에게 변경의 여지를 비교적으로 협소하게 위임한) 지침 91/414/EWG(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유럽경제공동체) 구조 변경에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규정들의 엄격함은 법률 차원에서 명령 차원으로 격하됨을 통하여 달성된다. 제9절은 농업 및 임업 외의 生態環境破壞物質(Biozid)의 살포에 대한 특별규정을 다룬다(제515조-제522조). 草案은 생태환경파괴물질과 결부된 위험과 관련하여 생태환경파괴물질의 허가절차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개개 생태환경파괴물질분류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유연한 형태를 경험한다. 草案은 適應의 許可(Indikationszulassung)로부터 출발한다. 제10절(제523조-제531조)은 洗劑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본질적으로는 洗劑法(Wasch- und Reinigungsmittelgesetz, WRMG)의 입증된 규정들을, 물론 체계화되고 치밀화된 형식으로 넘겨받고 있다. 제11장(제532조-제541조)은 화학비료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한다. 초안은 화학비료 등의 유통에 관한 규정에 제한된다. 현행법의 전형적인 허가절차와 포장 및 표시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제12장(제542조-제557조)은 위험한 화물들의 운송에 대한 특별규정을 다루고 있다. 현행법은 운송법의 명령들로부터 나오는 의무들을 법률적 차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중요한 실질적인 규정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 제13절은 법령위반(불법) 구성요건이다(제558조).

제7장 廢棄物 管理(Abfallwirtschaft)와 廢棄物 處理 (Abfallentsorgung)

제7장은 개별 환경법의 실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분야는 지금까지는 연방법의 수준에서 폐기물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발해진 法規命令(Rechtverordnungen)에 의하여 주로 규정되어 왔다.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정책적 전략은 이미 이 草案의 핵심적인 부분이 심의되고 있을 때 비로소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7장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소위 물질 유출의 영역은 특히 회수의무가 물질법(Stoffrecht) 草案(제468조)으로 규정된다. 현행법과 비교할 때 무엇보다도 목적과 원칙의 규정들을 통한 내용의 풍부화, 예방 메카니즘의 강화, 운송법의 보다 상세한 규정 그리고 연방법 차원에서의 廢棄物負擔金의 도입이 규정되어 있다. 環境法典 總則의 差減(Entlastung) 機能을 통하여 특히 처리계획, 시설허가, 감시에 관한 빈틈없는 규정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제1절(제559조-제563조)의 대상은 목적 규정, 諸 定義規定 그리고 諸 原則規範이다. 목적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제거보다는 예방에, 열 활용보다는 물질 활용의 우위가 폐기물법에 대하여 확고히 된다. 폐기물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개념의 병존이 유지된다. 폐기물 및 폐품(잔존물질, Reststoff)의 개념은 임미시온방지법의 관점에서 조정된다. 폐기물의 개념은 특히 임미시온방지법과 관련해서 특별규정(Sonderregelungen)을 위한 실마리(Anknüpfung)를 제공해야 한다(제560조). 방사선보호법 및 물질법의 실질적인 처리규정들과 임미시온방지법의 예방 및 활용 규정들이 해당 폐기물법의 규정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오래된 기름의 처리에 대한 폐기물법의 확장 적용은 유지된다(제561조). 諸 原則規定(제562조)에 의하여 수량과 有害性에 관련되는 예방의 우선순위와 재사용명령(Weiterverwendungsgebot), 열의 사용보다는 물질 사용의 우선, 운송회피명령(Transportvermeidungsgebot)은 유지된다. 제2절(제564조-제568조)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특히 폐기물법 제3조와 제4조)의 기본구조는 여기에서 유지되고 있다. 폐기물처리 의무(제564조), 양도의무(제565조), 폐기물처리 의무자의 정보청구권(제566조), 이른바 시설강제(제568조) 등이 규정되고 있다. 제3절(제569조-제570조)은 폐기물 처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환경법전 총칙 제26조에 의하여 이제까지의 폐기물처리계획(폐기물법 제6조)이 환경법전 총칙에 수용되었다. 따라서 환경법전 각론에서는 단지 보충적인 규정들만이 존재한다. 제4절(제571조-제580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과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제거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들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폐기물법상의 허가당국을 폐기물집하장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립과 운영은 환경결과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승인을 필요로 한다(제572조). 제5절(제581조-제582조)은 총칙의 해당 규정들(제57조 이하)에 의하여 상당히 差減(相殺)되고 있는데, 감시와 위탁운영(경영대리인)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제582조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대리인의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절(제583조-제589조)은 폐기물의 국내에서의 운송 및 반입, 통과, 반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위험물법은 그대로 남아 있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폐기물법 제12조의 일련의 잠정적인 결과들과는 다르게 된다. 개별적인 수거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제안된 허가요건들에 대하여 운송을 위하여 제3자보호 규정을 없앴다. (부분적으로 강화된) 현재의 법률적 전제들에서 모든 운송법적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절(제590조-제595조)은 상세한 법정책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현행 연방법이 알지 못했던 폐기물공과금의 인상과 사용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草案은 “發生者公課金”(Erzeuger - Abgabe)를 규정하고 있다(제590조).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모든 사람들이 의무를 부담한다. 公課金料金は 草案 자체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593조). 그 점은 순전히 정책적 결단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제8절(제596조-제597조)은 경과규정과 법령위반규정을 포함한다.

제8장 附則(終結規定, 제598조)

제8장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날짜와 관련하여— 施行規定을 포함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필요한 經過規定과 適應規定의 명문화는 도외시되었는데, 당시로서는 法典化計劃의 성공적인 종결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종합적 상황을 아직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Ⅲ. 展 望

1. 各論을 통한 總則의 필수적인 調和와 수정

언급한 바와 같이 각론은 총칙의 토대 위에서 작업되어야 했다. 하지만 각론의 筆者들은 이미 그 작업 초기에 각론의 법전화로 인해 몇몇 경우에는 다시 총칙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총칙과 관련하여 일련의 제안과 심사위임을 정식화하였는데, 그것들은 아직 총칙과 각론의 최종적인 조정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獨立的인 專門委員會

여기에서 제시된 환경법전의 학문적 초안 외에 독일에서의 환경법의 법전화를 위한 더 많은 방법들이 경쟁하고 있다. 전체적인 초안 작업 초기에 이미 Kloepfer, Storm 등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수위원회를 실무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에 상응하여 환경과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을 담당하는 연방장관(연방환경장관)은 1992년 7월 2일 前 연방행정재판소장 Sendl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전문위원회(SK-UGB)를 발족시켰다. 위 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실무가들과 학자들을 불러들였다.⁶⁾ 그 구성으로 이미 위 전문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순전히 학문적인 식에 의존하는 교수연구반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 —즉 합의와

타협에 의존하는 정치적 과정— 사이의 架橋的 機能을 떠맡을 수 있게 되었다. 위 전문위원회는 아마도 1997년까지는 교수들 초안의 관점에서 통일적인 환경법전의 초안을 그 근거지움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다시 전문담당자들에 의한 초안의 토대가 될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1992년 9월에 활동을 시작했고, 이미 1994년에는 그 중간조처로서 空間的으로 중요한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의 단축과 단순화를 제안했다.

3. 眺 望

전체적으로 各論이 만들어지고 그와 결부되어 環境法典의 학문적인 초안이 완비됨에 따라 환경법의 법전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 되었다. 환경법전의 학문적 초안은 環境法 法典編纂의 기본적인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법전편찬은 전체적으로 보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물론 시간과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신뢰를 더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항상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 附 錄 : 環境法典의 各論(特別篇) 概觀 ♣

제1장 : 자연보호와 풍경보호(Landschaftspflege)

(제170조 - 제221조)

제1절 통칙 (제170조 - 제177조)

제2절 일반적인 자연관리보호(제178조 - 제186조)

제1관 계획

제2관 자연과 풍경에서의 침해

제3관 보호(Pflege)

-
- 18) 위원회에는 의장 외에 다음과 같은 위원이 있다. 변호사 겸 교수인 Manfred Bulling박사; Günter Gaentzsch박사; Hubert Peter Johann박사; Humboldt대학교 교수인 Michael Kloepfer박사; 참사회의 구성원인 Rüdiger Schweiki박사; 변호사인 Dieter Sellner박사; Bremen대학교 교수인 Gerd Winter박사

제3절 특별 동·식물의 생활공간 보호 및 평지 보호(제187조 - 제196조)

제1관 법률 직적접인 동·식물의 생활공간보호(제187조, 제188조)

제2관 특별 평지보호(제189조 - 제196조)

제4절 야생동물과 야생식물 보호(제197조 - 제210조)

제1관 과제 및 개념정의(제197조 - 제198조)

제2관 일반보호 및 특별보호(제199조 - 제204조)

제3관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특별 보호(제205조 - 제210조)

제5절 지표환경규정, 보상 및 재해 보상(제211조 - 제213조)

제6절 통칙(제214조 - 제221조)

제2장 : 하천보호와 수자원관리(제222조 - 제282조)

제1절 통칙(제222조 - 제228조)

제2절 開始統制(제229조 - 제241조)

제1관 이용을 위한 통칙(제229조 - 제234조)

제2관 환경승인을 위한 특별규정(제235조 - 제238조)

제3관 허가(Erlaubnis)를 위한 특별규정(제239조)

제4관 이용을 위한 其他 법적 기초(제240조 - 제241조)

제3절 地上河川에 대한 규정(제242조 - 제254조)

제1관 地上河川의 관리(제242조 - 제244조)

제2관 허가가 필요없는 이용(제245조 - 제247조)

제3관 폐수제거(제248조 - 제250조)

제4관 확장 및 보수(제251조 - 제254조)

제4절 領海를 위한 규정(제255조 - 제256조)

제5절 地下水를 위한 규정(제257조 - 제261조)

제6절 水害의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제262조 - 제263조)

제7절 영역과 관련된 하천보호(제264조)

제8절 執行(Vollzug)과 환경대리인(Umweltbeauftragte)(제265조 - 제270조)

제9절 環境公課金(Umweltabgabe)(제271조 - 제281조)

- 제1관 통칙(제271조 - 제273조)
- 제2관 有害性的의 조사(Ermittlung)(제274조 - 제277조)
- 제3관 公課金納付義務者(제278조 - 제279조)
- 제4관 공과금의 확정, 징수와 사용(제280조 - 제281조)
- 제10절 법령위반구성요건(Ordnungswidrigkeitentatbest
nde)(제282조)

제3장 : 지표환경보전(제283조 - 제313조)

- 제1절 통칙(제283조 - 제286조)
- 제2절 지표환경보존[제287조 - 제292조(각칙 본문에도 제302
조로 나와 있고 부록에는 제292조로 나와 있는 바, 이
는 제301조의 誤記인 듯?)]
- 제1관 量的 지표환경보전(제287조)
- 제2관 質的 지표환경보전(제288조 - 제292조)
- 제3관 지표환경감시(제293조 - 제296조)
- 제4관 지표환경침해영역(제297조)
- 제5관 지표환경상태의 파악 및 감시(제298조 - 제300조)
- 제6관 지표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제301조)
- 제3절 지표환경복구와 지표환경보전(제302조 - 제311조)
 - 제1관 지표환경오염(제302조 - 제306조)
 - 제2관 지표환경의 有害化(지표환경의 有害土質化제307
조 - 제311조)
- 제4절 통칙(제312조 - 제313조)

제4장 : 임미시온防止(제314조 - 제376조)

- 제1절 통칙(제314조 - 제317조)
- 제2절 시설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제318조 - 제356조)
 - 제1관 요허가시설의 창립 및 운영(제318조 - 제336조)
 - 제1항목 사물적 요구(제318조 - 제320조)
 - 제2항목 허가의무와 신고의무(제321조 - 제328조)
 - 제3항목 허가의 절차와 허가의 효과(제329조 - 제333조)

제4항목 사후조치(제334조 - 제336조)

제2관 허가를 요하지 않는 시설의 창립 및 운영(제337조 - 제340조)

제3관 감시 및 기업 내 환경보호조직(제341조 - 제353조)

제1항 시설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시와 자체 감시(제341조 - 제348조)

제2항 환경대리인과 기업조직(제349조 - 제353조)

제4관 설비의 생산, 유통 및 수입(제354조 - 제356조)

제3절 교통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제357조 - 제365조)

제1관 교통수단(차량)의 상태 및 운행(제357조 - 제360조)

제2관 교통로(제361조 - 제365조)

제4절 영역과 관련된 임미시온防止(제366조 - 제370조)

제5절 통칙(제371조 - 제376조)

제5장 원자력과 방사선 보호(제377조 - 제438조)

제1절 통칙(제377조 - 제379조)

제2절 開始統制 및 監督(제380조 - 제408조)

제1관 요허가시설의 창립 및 운영(제380조 - 제382조)

제2관 핵원료 및 그 밖의 방사능이 있는 물질과의 관계(제383조 - 제385조)

제3관 폐기물 처리(제386조 - 제389조)

제4관 환경승인의 범위 및 효과(제390조 - 제396조)

제5관 감독 및 감시(제397조 - 제399조)

제6관 방사선보호를 위한 환경대리인(제400조 - 제403조)

제7관 관할(제404조 - 제406조)

제8관 授權(제407조 - 제408조)

제3절 방사선보호를 위한 예비조치(제409조 - 제412조)

제4절 책임규정 및 填補準備(제413조 - 제432조)

제1관 통칙(제413조)

제2관 책임(제414조 - 제429조)

제3관 填補準備(제430조 - 제432조)

제5절 통칙(제433조 - 제438조)

제6장 위험물질(제439조 - 제558조)

제1절 통칙(제439조 - 제443조)

제2절 新物質의 申告(제444조 - 제452조)

제3절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특징, 제조 및 제조물(제453조 - 제457조)

제4절 통지의무(제458조 - 제464조)

제5절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피고용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465조 - 제 471조)

제6절 실험실지침(Gute Laborpraxis)

제7절 절차와 공공기관조직(473 - 479조)

제8절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제480조 - 제514조)

제1관 통칙(제480조 - 제483조)

제2관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에 대한 허가(제484조 - 제492조)

제3관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의 유통(제493조 - 제495조)

제4관 식물보호를 위한 약제의 사용(제496조 - 제499조)

제5관 식물보호를 위한 기구(제500조 - 제502조)

제6관 식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제(제503조)

제7관 식물보호를 위한 授權(제504조 - 제506조)

제8관 통칙(제507조 - 제514조)

제 9 절 生態環境 破壞 物質(Biozide)(제515조 - 제522조)

제10절 洗劑(제523조 - 제531조)

제11절 화학비료(제532조 - 제541조)

제12절 위험 화물의 운송(제542조 - 제557조)

제13절 법령위반구성요건(Ordnungswidrigkeitentatbestende)(제558조).

제7장 廢棄物 管理(Abfallwirtschaft)와 廢棄物 處理(제559조 - 제597조)

제1절 통칙(제559조 - 제563조)

제2절 폐기물 처리의무 및 폐기물 처리 규정(제564조 - 제568조)

제3절 폐기물 처리 계획(제569조 - 제570조)

제4절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폐쇄(제571조 - 제580조)

제5절 감시와 환경대리인(제581조 - 제582조)

제6절 폐기물의 운송(제583조 - 제589조)

제7절 폐기물공과금(제590조 - 제595조)

제8절 통칙(제596조 - 제597조)

제8장 附則(제598조)